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 2022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 기 도



# 목 차

## I. 2022년 보육사업 안내

- 목적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 5
- 2022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 7

## II. 2022년 도정 운영 방향

- 2022년 도정 운영 방향 ..... 19

## III. 2022년 추진방향 및 보육여건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20
- 보육환경 여건 ..... 20

## IV. 2022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도비> ..... 22
- ②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비예산> ..... 25
- ③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26
- ④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도비> ..... 28
- 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 29
- ⑥ 국공립 신임원장 역량강화 교육<도비> ..... 32
- ⑦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34
- ⑧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도비> ..... 41
- ⑨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도비> ..... 43

##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국·도비>	45
② 열린어린이집 지원<비예산>	47
③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비예산>	49
④ 어린이집 환경개선<국·도비>	50
⑤ 어린이집 평가<비예산>	52
⑥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도비>	54
⑦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 추진<비예산>	58
⑧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도비>	59
⑨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63
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도비>	65
⑪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도비>	67
⑫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 배치<도비>	68

##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도비>	70
② 누리과정 운영 지원<도비>	72
③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74
④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76
⑤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도비>	78
⑥ 영아수당 지원<국·도비>	83
⑦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도비>	85
⑧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87
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도비>	88
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도비>	90
⑪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	92
⑫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98
⑬ 교재교구비 지원<국·도비>	101
⑭ 차량운영비 지원<국·도비>	103
⑮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국·도비>	105

####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	107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	111
③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도비> .....	114
④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	117
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국·도비> .....	121
⑥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국·도비> .....	124
⑦ 교사겸직원장 지원<국·도비> .....	127
⑧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국·도비> .....	129
⑨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국·도비> .....	135
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국·도비> .....	140
⑪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	144
⑫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	145
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도비> .....	146
⑭ 영아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 운영<비예산> .....	147
⑮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도비> .....	149
⑯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도비> .....	150

#### V.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152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153
○ 보육료 지원기준표 · 처우개선비 지원표 .....	154
○ 주요 보육통계표 .....	155
○ 자치법규(소관조례) .....	156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	170



# I . 2022년 보육사업 안내

## 목 적

이 안내(지침)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보육 조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 일반사항

- 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이 안내(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안내를 적용한다.

### □ 어린이집 세부운영 규정

- 시·군 및 각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예산편성 기준

○ 어린이집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 20인 미만 : 월 350,000원

- 20~59인 : 월 400,000원

- 60~99인 : 월 450,000원

- 100인 이상 : 월 500,000원

※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은 의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그 외 어린이집은 권고

\* 공공형 어린이집은 '22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이미 시행 중인 시군은 자체기준으로 추진, 미시행 시군은 도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시 자체기준 마련 시행 가능

○ 예산편성 : 매년 12월 ~ 익년 2월에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 집행 : 매월 집행 시점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

## □ 기타 적용사항

○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 각종 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시 평가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 2022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예산편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규모별(현원 기준) 직책급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원 20인 미만 : 월 350,000원</li> <li>- 현원 20-59인 : 월 400,000원</li> <li>- 현원 60-99인 : 월 450,000원</li> <li>- 현원 100인 이상 : 월 500,000원</li> </ul> </li> <li>※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은 의무 적용,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그외 어린이집은 권고</li> <li>* 공공형 어린이집은 '22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li> <li>※ 이미 시행 중인 시군은 자체기준 추진, 미시행 시군은 도 기준 준용하되 필요시 자체기준 마련 시행 가능</li> </ul>	편성기준 신설																														
<b>1. 보육의 공공성 강화</b>																																	
<b>○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b>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1,900천원 / 인</li> <li>- 추가반 운영비 : 월500천원 / 반</li> <li>-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457천원 / 인</li> <li>- 조리원 인건비 : 월600천원/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2,000천원 / 인</li> <li>- (생략)</li> <li>-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461천원 / 인</li> <li>- (생략)</li> </ul> </li> </ul>	지원단가 인상																														
선정기준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 (생략)</li> <li>- 어린이집 ----- (생략)</li> <li>-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li> <li>※ 2021년 한시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생략)</li> <li>-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li> <li>※ 2022년 한시적용</li> </ul> </li> </ul>	코로나19에 따른 정원충족률 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기본요건을 ---- (생략)</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세부항목(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우수성·전문성 (45)</td> <td>맞춤형 보육지원 (20)</td> <td>보육교직원 전문성 (15)</td> <td colspan="2">자체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td> </tr> <tr> <td>인프라·특성화 (55)</td> <td>운영기간·정원충족 (20)</td> <td>건물소유·안정성 (20)</td> <td colspan="2">시군 특성화지표 (15)</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45)	맞춤형 보육지원 (20)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자체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인프라·특성화 (55)	운영기간·정원충족 (20)	건물소유·안정성 (20)	시군 특성화지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세부항목(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우수성·전문성 (55)</td> <td>맞춤형 보육지원 (25)</td> <td colspan="2">보육교직원 전문성 (30)</td> </tr> <tr> <td>인프라·특성화 (45)</td> <td>운영기간·정원충족 (30)</td> <td colspan="2">기타 심사기준 (15)</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55)	맞춤형 보육지원 (25)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인프라·특성화 (45)	운영기간·정원충족 (30)	기타 심사기준 (15)		심사기준 변경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45)	맞춤형 보육지원 (20)	보육교직원 전문성 (15)	자체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인프라·특성화 (55)	운영기간·정원충족 (20)	건물소유·안정성 (20)	시군 특성화지표 (15)																														
구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55)	맞춤형 보육지원 (25)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인프라·특성화 (45)	운영기간·정원충족 (30)	기타 심사기준 (15)																															
지원내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단가</th> <th>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 <td>1,900천원/인</td> <td>(생략)</td> </tr> <tr> <td>추가반 운영비</td> <td>600천원/반</td> <td>(생략)</td> </tr> <tr> <td>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 <td>457천원/인</td> <td>(생략)</td> </tr> <tr> <td>조리원 인건비</td> <td>600천원/인</td> <td>(생략)</td> </tr> </tbody> </table> </li> </ul>	구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1,900천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57천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단가</th> <th>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 <td>2,000천원/인</td> <td>(생략)</td> </tr> <tr> <td>추가반 운영비</td> <td>600천원/반</td> <td>(생략)</td> </tr> <tr> <td>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 <td>461천원/인</td> <td>(생략)</td> </tr> <tr> <td>조리원 인건비</td> <td>600천원/인</td> <td>(생략)</td> </tr> </tbody> </table> </li> </ul>	구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000천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1천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생략)	지원단가 인상
구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1,900천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57천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생략)																															
구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000천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1천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생략)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지원내용 및 기준	<p>○ 지원기준</p> <p>- 0세아 전용 -----(생략)</p> <p>※ 예) '21년 1월 기준 0세 5명, 1세 8명, 2세 7명 재원 중일 경우 0세반 3개반, 1세반 3개반이 구성된 월부터 지원, 2세반 아동은 '22년 2월28일까지 퇴소 완료</p> <p>※ (신설)</p>	<p>○ 지원기준</p> <p>- (생략)</p> <p>※ 예) 신규지정 당시 0세 5명, 1세 8명, 2세 7명 재원 중일 경우 0세반 3개반, 1세반 3개반이 구성된 월부터 지원, 2세반 아동은 신규 지정된 익년 2월28일까지 퇴소 완료</p> <p>※ 신규 지정된 익년 2월28일까지 2세반 이상 아동 퇴소 미완료시 3월부터 퇴소 완료까지 지원 중단</p>	2세반 퇴소 기준 미준수 시 지원 중단기준 마련																																																																																									
	<p>※ 신규, 임용, --- (생략)</p> <p>- 1세·2세 혼합반 --- (생략)</p> <p>- 0세아 전용 어린이집 --- (생략)</p> <p>- 야간연장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3명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가 2명 이하로 감소되는 익월까지 지원)</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야간연장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가 없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p>	0세 보육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연장 추가반 수당 지원기준 변경																																																																																									
(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 2022년 변경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 <th>세부기준</th> <th>내용</th> <th>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맞춤형 보육 지원 (25)</td> <td rowspan="5">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td> <td>. 80% 이상~</td> <td>15</td> <td rowspan="5">별도 증빙자료 첨부</td> </tr> <tr> <td>. 70% 이상~80% 미만</td> <td>13</td> </tr> <tr> <td>. 60% 이상~70% 미만</td> <td>11</td> </tr> <tr> <td>. 50% 이상~60% 미만</td> <td>9</td> </tr> <tr> <td>. 65% 미만</td> <td>7</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야간연장보육 지정 (10점)</td> <td>. 지정</td> <td>10</td> <td></td> </tr> <tr> <td>. 미지정</td> <td>5</td> <td></td> </tr> <tr> <td rowspan="10">보육 교직원 전문성 (30)</td> <td rowspan="5">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10점)</td> <td>. 10년 이상</td> <td>10</td> <td rowspan="10"></td> </tr> <tr> <td>. 5년 이상~10년 미만</td> <td>8</td> </tr> <tr> <td>. 3년 이상~5년 미만</td> <td>6</td> </tr> <tr> <td>. 3년 미만</td> <td>4</td> </tr> <tr> <td>. 70% 이상</td> <td>10</td> </tr> <tr> <td rowspan="5">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td> <td>. 60% 이상~70% 미만</td> <td>8</td> </tr> <tr> <td>. 50% 이상~60% 미만</td> <td>6</td> </tr> <tr> <td>. 50% 미만</td> <td>4</td> </tr> <tr> <td>. 80% 이상</td> <td>10</td> </tr> <tr> <td>. 70% 이상~80% 미만</td> <td>8</td> </tr> <tr> <td rowspan="5">"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 보육교사 비율(원장포함) (10점)</td> <td>. 60% 이상~70% 미만</td> <td>6</td> </tr> <tr> <td>. 50% 이상~60% 미만</td> <td>4</td> </tr> <tr> <td>. 50% 미만</td> <td>2</td> </tr> <tr> <td>. 7년 이상</td> <td>15</td> </tr> <tr> <td>. 5년 이상~7년 미만</td> <td>12</td> </tr> <tr> <td rowspan="5">운영 기간 및 정원 충족률 (30점)</td> <td rowspan="5">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5점)</td> <td>. 3년 이상~5년 미만</td> <td>9</td> </tr> <tr> <td>. 3년 미만</td> <td>6</td> </tr> <tr> <td>. 80% 이상~</td> <td>15</td> </tr> <tr> <td>. 75% 이상~80% 미만</td> <td>12</td> </tr> <tr> <td>. 70% 이상~75% 미만</td> <td>9</td> </tr> <tr> <td rowspan="5">기타 (15점)</td> <td rowspan="5">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2021년 CIS 회계보고 건수 (10점)</td> <td>. 70% 미만</td> <td>6</td> </tr> <tr> <td>. 12건 이상</td> <td>10</td> </tr> <tr> <td>. 9건 이상</td> <td>7</td> </tr> <tr> <td>. 6건 이상</td> <td>4</td> </tr> <tr> <td>. 지정</td> <td>5</td> </tr> <tr> <td></td> <td>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td> <td>. 미지정</td> <td>3</td> <td></td> </tr> </tbody> </table>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비고	맞춤형 보육 지원 (25)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80% 이상~	15	별도 증빙자료 첨부	. 70% 이상~80% 미만	13	. 60% 이상~70% 미만	11	. 50% 이상~60% 미만	9	. 65% 미만	7		야간연장보육 지정 (10점)	. 지정	10		. 미지정	5		보육 교직원 전문성 (30)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10점)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10년 미만	8	. 3년 이상~5년 미만	6	. 3년 미만	4	. 70% 이상	10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 80% 이상	10	. 70% 이상~80% 미만	8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 보육교사 비율(원장포함) (10점)	. 60% 이상~70% 미만	6	. 50% 이상~60% 미만	4	. 50% 미만	2	. 7년 이상	15	. 5년 이상~7년 미만	12	운영 기간 및 정원 충족률 (30점)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5점)	. 3년 이상~5년 미만	9	. 3년 미만	6	. 80% 이상~	15	. 75% 이상~80% 미만	12	. 70% 이상~75% 미만	9	기타 (15점)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2021년 CIS 회계보고 건수 (10점)	. 70% 미만	6	. 12건 이상	10	. 9건 이상	7	. 6건 이상	4	. 지정	5		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	. 미지정	3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비고																																																																																								
맞춤형 보육 지원 (25)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80% 이상~	15	별도 증빙자료 첨부																																																																																								
		. 70% 이상~80% 미만	13																																																																																									
		. 60% 이상~70% 미만	11																																																																																									
		. 50% 이상~60% 미만	9																																																																																									
		. 65% 미만	7																																																																																									
	야간연장보육 지정 (10점)	. 지정	10																																																																																									
		. 미지정	5																																																																																									
보육 교직원 전문성 (30)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10점)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10년 미만	8																																																																																									
		. 3년 이상~5년 미만	6																																																																																									
		. 3년 미만	4																																																																																									
		. 70% 이상	10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 80% 이상	10																																																																																									
		. 70% 이상~80% 미만	8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 보육교사 비율(원장포함) (10점)	. 60% 이상~70% 미만	6																																																																																										
	. 50% 이상~60% 미만	4																																																																																										
	. 50% 미만	2																																																																																										
	. 7년 이상	15																																																																																										
	. 5년 이상~7년 미만	12																																																																																										
운영 기간 및 정원 충족률 (30점)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5점)	. 3년 이상~5년 미만	9																																																																																									
		. 3년 미만	6																																																																																									
		. 80% 이상~	15																																																																																									
		. 75% 이상~80% 미만	12																																																																																									
		. 70% 이상~75% 미만	9																																																																																									
기타 (15점)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2021년 CIS 회계보고 건수 (10점)	. 70% 미만	6																																																																																									
		. 12건 이상	10																																																																																									
		. 9건 이상	7																																																																																									
		. 6건 이상	4																																																																																									
		. 지정	5																																																																																									
	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	. 미지정	3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p>예3) 야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0, 1세 형제 자매 총 10명인 경우(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p>	<p>예3) 야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 포함하여 0,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 (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p>	야간연장 추가반 수당 지원 기준 변경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b>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b>																																			
<b>○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b>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u>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u></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u>정부미지원 어린이집</u></li> <li>※ 지원제외대상 : <u>조리원 인건비(국·도비) 기지원 중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u></li> <li>*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li> </ul>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시설 추가																																
사업추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u>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u></li> <li>※ 평가등급 공표일의 익월부터 지원</li> <li>※ <u>장애아전문, 영아전문,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국·도비 조리원 인건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u>정부미지원 어린이집</u></li> <li>※ 지원제외대상 : <u>조리원 인건비(국·도비) 기지원 중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u></li> <li>* <u>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u></li> </ul>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시설 추가																																
<b>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b>																																			
<b>○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b>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기준 (단위 : 천원)</li>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민간 (3세)</th> <th>민간 (4,5세)</th> <th>가정 (3~5세)</th> </tr> </thead> <tbody> <tr> <td>수납한도액</td> <td>353</td> <td>330</td> <td>356</td> </tr> <tr> <td>정부지원 보육료</td> <td>260</td> <td>260</td> <td>260</td> </tr> <tr> <td>차액보육료</td> <td>93</td> <td>70</td> <td>96</td> </tr> </tbody> </table> </ul>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53	330	356	정부지원 보육료	260	260	260	차액보육료	93	70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기준 (단위 : 천원)</li>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민간 (3세)</th> <th>민간 (4,5세)</th> <th>가정 (3~5세)</th> </tr> </thead> <tbody> <tr> <td>수납한도액</td> <td>385</td> <td>362</td> <td>388</td> </tr> <tr> <td>정부지원 보육료</td> <td>280</td> <td>280</td> <td>280</td> </tr> <tr> <td>차액보육료</td> <td>105</td> <td>82</td> <td>108</td> </tr> </tbody> </table> </ul>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85	362	38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차액보육료	105	82	108	수납한도액 변경으로 지원단가 인상 (2022. 3월부터 적용)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53	330	356																																
정부지원 보육료	260	260	260																																
차액보육료	93	70	96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85	362	38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차액보육료	105	82	108																																
<b>○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b>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수당 - 만0~5세 월 10~20만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수당 - 만0~1세 월 30만원 지급</li> <li>가정양육수당 - 만3~5세 월 10~20만원 지급</li> </ul>	신규사업 영아수당 지급 (2022. 1월 출생아 부터 적용)																																

구 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22.1.1부터 사업내용 변경 시행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기지정 ('20.7월말 이전)한 어린이집 (단,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li> <li>○ 지원내용 :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전담 3인, 통합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인건비 : 월 1,800천원/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u>어린이집</u></li> <li>○ 지원내용 : 외국인 자녀를 <u>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상 외국인 자녀 1인 당 월 22천원 운영비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받은 운영비 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 등 감면 실시</li> </ul> </li> </ul>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전면 개편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 '22년 신규사업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li> <li>○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u>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1명 월 2,670천원/인</li> </ul> </li> </ul>	신규사업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li> <li>○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생략)</li> <li>- 운영비 : <u>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u></li> </ul> </li> <li>* 지원제외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li> <li>** 기본보육 이용 ----(생략)</li> <li>○ 사 업 량 : 373,544명(정부미지원 310,306명 / 정부지원·공공형 63,238명)</li> <li>○ 지원내용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2,600원/인·월</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li> <li>○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생략)</li> <li>- 운영비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li> </ul> </li> <li>* (제외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li> <li>** 기본보육 이용 ----(생략)</li> <li>○ 사 업 량 : 347,390명(정부미지원 258,568명 / 정부지원 88,822명)</li> <li>○ 지원내용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원/인·월</li> <li>* 운영비 상한선 개소당 월 1,260,000원</li> </ul>	지원대상 및 단가 변경

구 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사업추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li> <li>* 예) 5월 3일(월), 8월 2일(월)]. 단, 1월은 ‘20.12.31까지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최종 현황 반영을 위해 1.5(화), 3월은 신학기 전환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아동 현원 반영을 위하여 3.8(월) 기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li> <li>* 예) 1월 3일(월), 3월2일(수), 5월 2일(월), 10월 4일(월)</li> </ul> </li> </ul>	‘22년 일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지원 --- (생략)</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현원 규모별 운영비 차등지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단가(원)</th> </tr> </thead> <tbody> <tr> <td>급식비</td> <td>1인당 7,400</td> </tr> <tr> <td>운영비</td> <td>1인당 12,600~14,600 (개소당 최대 1,260천원)</td> </tr> <tr> <td>40명미만</td> <td>1인당 14,600</td> </tr> <tr> <td>40명이상~100명미만</td> <td>1인당 12,600</td> </tr> <tr> <td>100명이상</td> <td>개소당 1,26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단가(원)	급식비	1인당 7,400	운영비	1인당 12,600~14,600 (개소당 최대 1,260천원)	40명미만	1인당 14,600	40명이상~100명미만	1인당 12,600	100명이상	개소당 1,260,000	지원기준 변경
	구 분	지원단가(원)													
	급식비	1인당 7,400													
	운영비	1인당 12,600~14,600 (개소당 최대 1,260천원)													
40명미만	1인당 14,600														
40명이상~100명미만	1인당 12,600														
100명이상	개소당 1,2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생략)</li> <li>- 운영비 : ----(생략)</li> </ul> </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생략)</li> </ul> </li> <li>* 기본보육활동비 5,000원 이상 집행 권고</li> </ul>	집행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간식 ----(생략)</li> <li>- 출석아동 감소에 따른 ----(생략)</li> <li>-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교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li> </ul> </li> <li>※ 매월 1일 현원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다만, 1월은 ‘20.12.31까지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최종 현황 반영을 위해 1.5(화), 3월은 신학기 전환에 따른 보다 정확한 아동 현원 반영을 위하여 3.8(월) 현원을 기준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생략)</li> <li>-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교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li> </ul> </li> <li>※ (삭제)</li> </ul>	중복사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운영비) ----(생략)</li> <li>- (운영비) ①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중인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자격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li> <li>② ‘20.12.31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 어린이집 ----(생략)</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운영비) ‘21.12.31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li> </ul> </li> </ul>	불필요한 제재기준 삭제 및 연도 현행화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b>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b>			
<b>○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b>			
사업개요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월급형 대체교사 --- (생략)</li> <li>* &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월급형 대체교사 --- (생략)</li> <li>*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li> </ul>	지원대상자 추가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지원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지원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u>이상</u>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생략)--</li> </ul>	국비 사업 기준 준용
사업추진안내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 (생략)</li> </ul>	문구 조정
<b>○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b>			
사업개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월급형 --- (생략)</li> <li>* &lt;신설&gt;</li> <li>-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월급형 --- (생략)</li> <li>*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li> <li>- 생략</li> </ul>	지원대상자 추가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지원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지원대상</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u>이상</u>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생략)--</li> </ul>	국비 사업 기준 준용
사업추진안내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일당형 대체인력, ---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 (생략)</li> </ul>	문구 조정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생략)--	○ 세부지원대상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생략)--	국비 사업 기준 준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2022년 변경사항			지원사유 및 일수 조정			
			지원 대상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담임 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 연장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 자	조리원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연가	1~20일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생략	생략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	○	○	○	
	감염성 질환	기간 제한없음	○	○	○	○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지원단가 : - 보육교사 : 일 83,14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1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0,393원)으로 지급 가능. 단, 지급액 원단위---(생략) ※ 생략 - 조 리 원 : 일 70,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8,750원)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운영비 : 월급형 대체교사 인원구간별 차등지원<신설> · 지원액	○ 지원단가 : - 보육교사 : 일 87,14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2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0,890원)으로 지급 가능, <삭제> ※ 생략 - 조 리 원 : 일 74,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250원)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운영비 : 월급형 대체교사 인원구간별 차등지원(반기별 지원/연 2회) · 지원액	연도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및 기준변경				

구 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p>&lt;표생략&gt;            ※ 인원기준 : 시군별 ‘21.6월말---(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p>	<p>&lt;표생략&gt;            ※ 인원기준 : 시군 센터별 ‘21.12월말(상반기), ‘22.6월말(하반기)---(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p>	
사업추진안내 (지급방식)	<p>○ 지원방식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보건복지부 --- (생략)            ※ 단, 65세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리원(0세아전용·공공형·가정민간어린이집, 농어촌 등 취약지원)의 대체인력은 65세까지 지급가능            - 생략</p>	<p>○ 지원방식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보건복지부 --- (생략)            ※ 단,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            - 생략</p>	지원기준 변경(조리원)
사업추진안내 (유의사항)	<p>○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lt;신설&gt;            ※ &lt;신설&gt; 어린이집에서---(생략)</p>	<p>○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시·군에서는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연1회 이상 점검·확인            ※ 동일 어린이집에서---(생략)</p>	국비사업 기준 준용
* 2022년 보건복지부 지침 주요내용			
보육료 수납액 결정	<p>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 사도시자            - (생 략)            ※ &lt; 신설 &gt;            ※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u>사회보장정보원에</u> 공문 통보</p>	<p>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 사도시자            - (현행과 같음)            ※ 1월말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되며, 결정된 수납액은 3월 이후 연도 중 변경 불가            ※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u>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u> 공문 통보</p>	
감염병 격리 예외 신설	<p>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lt;중략&gt;            ○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p>	<p>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lt;중략&gt;            ○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p>	

구 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p>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또는 <a href="http://idolbom.go.kr">http://idolbom.go.kr</a>)</p> <p>&lt;신설&gt;</p>	<p>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또는 <a href="http://idolbom.go.kr">http://idolbom.go.kr</a>)</p> <p>- 단, 해당 감염병(B형간염 등)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자라 하더라도 등원 중단 및 격리 대상이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대상이 아님.</li> <li>· 해당 질환자가 등원 제한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li> </ul>	
지방보육정책 위원수 변경	<p>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p> <p>○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6조)</p> <p>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p>	<p>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p> <p>○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u>성별을 고려하여</u>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6조)</p>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규정	<p>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p> <p>○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p> <p>※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p> <p>※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p> <p>※ (신설)</p>	<p>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p> <p>○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p> <p>※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p> <p>※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p> <p>※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p>	
보조·연장 교사 지원기준 완화	<p>가. 지원 기준</p> <p>1) 지원 대상</p> <p>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p> <p>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p>	<p>가. 지원 기준</p> <p>1) 지원 대상</p> <p>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p> <p>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p>	

구 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p>-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u>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u></p> <p>*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p> <p>※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p> <p>※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p>	<p>-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u>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u></p> <p>*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p> <p>※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p> <p>※ (식제)</p>	
	<p>아. 지원절차</p> <p>○ (지원대상 선정)</p> <p>-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 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 (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p> <p>&lt;신설&gt;</p>	<p>아. 지원절차</p> <p>○ (지원대상 선정)</p> <p>-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p> <p>※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u>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u></p>	
<p>보육교사 처우개선</p>	<p>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p> <p>3) 특례인정 조건</p> <p>○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u>수입금을</u>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p> <p>-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준용(&lt;신설&gt;)</p> <p>&lt;신설&gt;</p>	<p>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p> <p>3) 특례인정 조건</p> <p>○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u>수입금의 최소 30% 이상을</u>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p> <p>-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준용 (미준수 시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 적용 제외)</p> <p>※ 만1세반은 127,800원 이상, 만2세반은 105,9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p>	
	<p>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사업기간) ' 21년 1월 ~ ' 21년 12월 (지원단가) 월 2,271천원, ' 21년 1월부터 적용</p>	<p>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사업기간) ' 22년 1월 ~ ' 22년 12월 (지원단가) 월 2,303천원, ' 22년 1월부터 적용</p>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29천원/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li> <li>·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li> <li>·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li> <li>·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li> </ul>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55천원/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li> <li>·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li> <li>·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li> <li>·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li> </ul>	
보수교육 기간 명확화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신설>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임면보고 제출서류 정비	교 직 원 임 면 보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 (채용 후 14일 이내)</li> <li>·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기록카드, &lt;신설&gt;,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li> </ul> </li> </ul>	교 직 원 임 면 보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 (채용 후 14일 이내)</li> <li>·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li> </ul> </li> </ul>	
	2.보육교직원 임면(채용,해임 등) 가)공통서류 (중략) ○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신설>	2.보육교직원 임면(채용,해임 등) 가)공통서류 (중략) ○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자) 생략 가능			

구분	2021년		2022년		변경사유
교재·교구비 지원	가. 대상시설 ○ 2020년 12월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정원충족률이 85%이상인 어린이집은 제외 (단,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대상시설 ○ 2021년 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정원 충족률 85%미만),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중앙 또는 지자체 어린이집간 협력(다가치보육 등)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과 관계없이 선정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육료·양육수당 처리기한 단축	처리 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처리 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보육료 지원 예산의 예탁금 관리 기준 변경	부록14. 보육료 지원 예산의 예탁금 관리 기준(2017.11 개정)		부록14. 보육료 지원 예산의 예탁금 관리 기준(2022.1.1. 개정)		

## Ⅱ. 2022년 도정 운영 방향



### Ⅲ. 2022년 추진방향 및 보육여건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정책  
목표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중점  
추진  
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보육 환경여건

##### ◇ [저출생 기조] 영유아(만0~5세)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 저출생의 영향으로 道 영유아(만0~5세) 인구 3년간 10.5만명(15.5%) 감소
  - 道 영유아 인구: ( '19년) 65.1만명 → ( '20년) 61.6만명 → ( '21년) 57.3만명
  - 전국 영유아인구: ( '19년) 228.6만명 → ( '20년) 212.1만명 → ( '21년) 194.3만명 (△15.0%)
- 특히, 도내 만0세 영유아 인구는 3년간 1.1만명(12.6%) 감소
  - 道 만0세아 인구: ( '19년) 8.3만명 → ( '20년) 7.7만명 → ( '21년) 7.5만명
  - 전국 만0세아인구: ( '19년) 29.5만명 → ( '20년) 26.5만명 → ( '21년) 25.4만명 (△13.9%)

##### ◇ [인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신도시 중심 인구 증가

- 도내 여성경제참여인구 3년간 13.3만명(4.4%)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53.1%
  - 道여 성경제참여인구: ( '19년) 300.7만명 → ( '20년) 291.4만명 → ( '21년) 314만명
  - 道 인구: ( '19년) 1,324만명 → ( '20년) 1,343만명 → ( '21년) 1,357만명
- 저출생 및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및 재원 아동수 지속 감소
  - 어린이집 수: ( '19년) 11,305개소 → ( '20년) 10,761개소 → ( '21년) 10,136개소
  -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 '19년) 38.9만명 → ( '20년) 35.9만명 → ( '21년) 35.0만명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

- 종일반 보육체계 → 기본보육(09:00~16:00), 연장보육(16:00~19:30)
- 연장반 전담교사 범위 확대, 탄력보육, 인력뱅크 운영

## **IV. 2022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3.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 4.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 1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공동주택 단지,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목 표** :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150개소 이상(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량(본예산) : 58개소 \* 시군 추가 수요분 지속 발굴
- 사업내용

확충 유형	내용	지원기준
신축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최대 2,157백만원
매입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최대 2,157백만원
생활soc복합화	동일 건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최대 2,157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500세대 이상 국공립 의무설치('19.9.25.시행)	최대 110백만원
장기임차(5~10년)	자가소유 민간('18년~)	최대 210백만원
	자가소유 가정('20년~)	최대 150백만원
	자가소유 농어촌 민간('21년~)	최대 210백만원

※ 기자재비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71,850,969	31,020,569	24,618,888	16,211,512
국비	39,104,419	16,500,898	13,317,625	9,285,896
도비	17,166,414	7,520,037	5,965,430	3,680,947
시군비	15,580,136	6,999,634	5,335,833	3,244,669

※ 확충실적 : (2020년) 161개소 (2021년) 154개소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 : 매년 150개소 이상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신속 개원

# 참고 1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안)

### □ 21개 시군 75개소(신축 11, 생활soc 15, 공동주택 49)

※ 신축 11개소('21년 2차 7개소, '22년 신규 4개소)

생활soc 15개소('20년 3차 4개소, '21년 2차 6개소, '22년 1차 5개소)

시군	확충유형(개소)				예산액(단위 : 천원)			
	계	신축	생활soc	공동주택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75	11	15	49	16,211,512	9,285,896	3,680,947	3,244,669
수원시	-	-	-	-	-	-	-	-
용인시	4	-	2	2	445,628	243,376	101,126	101,126
성남시	3	-	3	-	1,180,832	708,500	236,166	236,166
화성시	8	1	-	7	1,837,220	1,132,300	352,460	352,460
부천시	4	2	-	2	1,289,120	644,560	322,280	322,280
안산시	-	-	-	-	-	-	-	-
평택시	11	2	1	8	2,338,510	1,668,382	553,203	116,925
안양시	2	-	-	2	240,000	120,000	60,000	60,000
시흥시	3	2	1	-	1,261,434	656,300	302,567	302,567
김포시	-	-	-	-	-	-	-	-
광주시	1	-	1	-	381,666	229,000	76,333	76,333
광명시	1	-	1	-	-	-	-	-
하남시	4	-	-	4	480,000	240,000	120,000	120,000
군포시	-	-	-	-	-	-	-	-
오산시	1	-	-	1	120,000	60,000	30,000	30,000
이천시	-	-	-	-	-	-	-	-
안성시	1	1	-	-	293,300	146,650	73,325	73,325
의왕시	-	-	-	-	-	-	-	-
양평군	-	-	-	-	-	-	-	-
여주시	-	-	-	-	-	-	-	-
과천시	2	-	-	2	240,000	120,000	60,000	60,000
고양시	8	-	1	7	1,006,666	520,000	243,333	243,333
남양주	2	-	-	2	240,000	120,000	60,000	60,000
파주시	1	-	-	1	120,000	60,000	30,000	30,000
의정부	2	-	-	2	240,000	120,000	60,000	60,000
양주시	10	1	2	7	2,991,501	1,551,211	720,145	720,145
구리시	3	-	2	1	500,000	288,000	106,000	106,000
포천시	3	1	1	1	357,992	178,996	89,498	89,498
동두천	-	-	-	-	-	-	-	-
가평군	1	1	-	-	338,043	169,021	84,511	84,511
연천군	-	-	-	-	-	-	-	-
유보액	-	-	-	-	309,600	309,600	-	-

## 참고 2

##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개소, %)

시군	어린이집		운영율	영유아 현원		이용률
	전체	국공립		전체(A)	국공립(B)	
계	10,136	1,220	12%	351,449	70,673	20.1%
과천시	51	15	29%	2,129	812	38.1%
연천군	26	7	27%	867	315	36.3%
하남시	251	54	22%	9,971	3,354	33.6%
오산시	237	42	18%	7,657	2,568	33.5%
성남시	546	88	16%	19,656	6,246	31.8%
광명시	220	31	14%	6,752	2,129	31.5%
양평군	47	11	23%	2,412	721	29.9%
의왕시	123	21	17%	4,476	1,192	26.6%
시흥시	479	75	16%	17,540	4,452	25.4%
가평군	34	6	18%	1,232	298	24.2%
군포시	207	25	12%	6,321	1,437	22.7%
고양시	671	85	13%	22,957	5,194	22.6%
구리시	140	15	11%	4,437	976	22.0%
김포시	439	51	12%	14,590	3,107	21.3%
남양주시	583	85	15%	19,072	3,973	20.8%
동두천시	79	8	10%	2,378	490	20.6%
화성시	815	111	14%	27,007	5,543	20.5%
평택시	414	61	15%	15,533	3,100	20.0%
포천시	92	18	20%	3,571	701	19.6%
안양시	380	37	10%	12,487	2,446	19.6%
양주시	211	25	12%	7,104	1,314	18.5%
의정부시	369	35	9%	11,664	2,049	17.6%
안산시	427	42	10%	16,750	2,682	16.0%
부천시	518	52	10%	16,473	2,576	15.6%
파주시	392	34	9%	13,355	2,030	15.2%
안성시	159	18	11%	5,794	831	14.3%
수원시	896	63	7%	27,207	3,880	14.3%
이천시	155	20	13%	6,826	916	13.4%
용인시	793	51	6%	29,408	3,528	12.0%
광주시	316	28	9%	13,574	1,587	11.7%
여주시	66	6	9%	2,249	226	1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 등 운영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 사업장
- 설치유형 : 직접설치 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 단독(공동) 직접설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
  - 위탁보육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 위탁보육
- 재원부담 : 사업주는 보육 필요 비용의 50% 이상 부담

### □ 향후계획

- ‘21.12.31.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22.1.20 ~ 5.31. / (조사결과 공표) ’ 22.5월 예정
- 단독(공동) 직접설치 어린이집 관리 : 291개소(비의무 사업장 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이행 여부 지속 관리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주체
  - 도지사 : 관할 시·군청 중 미이행 사업장
  - 시장·군수 : 그 외 모든 의무 미이행 사업장
- 부과방법 : 이행명령(1·2차), 이행강제금(1·2차) 부과
- 부과금액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
  - ※ 단, 회당 최대 1억원 부과
- 부과시기 : 최초 이행명령 → 미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 시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2회) (1년간 2회)

## 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 연 혁

- 시범 운영 : 2011년 7월~
- 본격 운영 : 2012년 7월~
- 운영비 지급기준 변경 : 2018년 1월~ ※ 운영비 지원 상한액(월 최대 1,000만원) 폐지

### □ 사업개요

- 대 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일부 제외)
- 기 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량 : 631개소
- 총사업비 : 22,715백만원
- ※ 보조율 : 도비 75%, 시군비 25% (차등보조)

\* 보건복지부 차등보조를 적용 / '22년 이양, '26년까지 5년간 국비금액 행안부 보전금으로 충당

### □ 지원기준

- ※ 신규 및 재선정 기관 및 기존 운영 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 지급

	구 분	단 가	기 준
1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1개반당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반당
3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68,361,383	22,792,600	22,853,362	22,715,421
국 비	25,975,000	12,764,000	13,211,000	-
도 비	31,618,972	6,037,660	6,250,612	19,330,700
시군비	10,767,411	3,990,940	3,391,750	3,384,721

(단위 : 천원)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610개소(증2)	641개소(증31)	639개소(감2)	644개소(증5)	

# 참고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2021. 12월 말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b>합 계</b>	<b>644</b>	<b>424</b>	<b>32</b>	<b>46</b>	<b>20</b>	<b>20</b>	<b>19</b>	<b>34</b>	<b>28</b>	<b>6</b>	<b>15</b>
<b>남 부</b>	<b>501</b>	<b>335</b>	<b>23</b>	<b>37</b>	<b>14</b>	<b>17</b>	<b>15</b>	<b>24</b>	<b>21</b>	<b>3</b>	<b>12</b>
수원시	45	37	2	3	2	-	1	-	-	-	-
성남시	33	33	-	-	-	-	-	-	-	-	-
안양시	35	28	1	2	1	1	-	-	2	-	-
부천시	54	43	2	4	1	-	2	2	-	-	-
광명시	24	20	-	2	-	1	1	-	-	-	-
평택시	28	16	2	1	-	2	-	2	3	1	1
안산시	35	14	3	1	3	-	3	7	4	-	-
오산시	31	26	-	3	-	-	1	-	-	-	1
시흥시	27	20	2	4	-	1	-	-	-	-	-
군포시	12	12	-	-	-	-	-	-	-	-	-
의왕시	6	3	1	-	-	1	1	-	-	-	-
하남시	8	1	-	2	1	1	1	-	1	-	1
용인시	36	24	1	3	3	1	-	1	2	-	1
이천시	23	5	4	-	-	4	3	2	3	-	2
안성시	19	7	-	2	-	3	-	4	1	1	1
김포시	14	10	-	2	2	-	-	-	-	-	-
화성시	15	8	2	1	1	-	-	2	1	-	-
광주시	27	21	-	-	-	1	1	1	-	-	3
여주시	15	4	2	4	-	-	1	-	3	1	-
양평군	14	3	1	3	-	1	-	3	1	0	2
<b>북 부</b>	<b>143</b>	<b>89</b>	<b>9</b>	<b>9</b>	<b>6</b>	<b>3</b>	<b>4</b>	<b>10</b>	<b>7</b>	<b>3</b>	<b>3</b>
고양시	35	28	1	3	2	-	1	-	-	-	-
의정부	12	8	1	-	-	-	-	2	1	-	-
남양주	31	23	2	1	-	1	1	2	1	-	-
파주시	19	9	1	2	3	-	-	2	1	1	-
구리시	12	8	1	1	1	-	-	1	-	-	-
포천시	15	3	3	-	-	2	-	1	2	2	2
양주시	11	8	-	-	-	-	1	1	1	-	-
동두천	1	-	-	-	-	-	1	-	-	-	-
가평군	3	-	-	-	-	-	-	1	1	-	1
연천군	4	2	-	2	-	-	-	-	-	-	-

## 1-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사업량 : 영유아 20,561명

○ 지원내용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7,524백만원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23,016,860	7,912,440	7,580,840	7,523,580
도비	6,547,378	2,259,504	2,116,800	2,171,074
시군비	16,469,482	5,652,936	5,464,040	5,352,50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급기준**

- 전월 말일 재원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해당 월 미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및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기준 준수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인건비(조리원)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631개소
- 총사업비 : 5,514백만원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조리원 채용기준에 의거)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 고
월지원액(개소당)	60만원	90만원	보육현원 기준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16,274,625	5,320,800	5,440,232	5,513,593
도 비	4,458,968	1,447,560	1,490,832	1,520,576
시군비	11,815,657	3,873,240	3,949,400	3,993,017

##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 지원요건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교직원(조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규모 변동 시 변동일자가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해당 규모의 월 지원액 지급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동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현원 40인 이상시 90만원 지급) ⇒ 단, 현원감소 시 2개월 유예기간 적용 (' 21년도 신설조항)

###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신규인증,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 지원기준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대상 직무역량 강화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으로 보육품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2. 6월 ~ 8월 중(예정)
- 교육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21년 신규·전환·재위탁) 300명
- 수탁기관 :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총사업비 : 30,000천원 (도비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교육운영 : 총 5회 / 300명(1회 당 60명 내외) / 집합교육(남·북부 구분)
  - 1기(6.27~7.01), 2기(7.11~7.15), 3기(7.25~7.29), 4기(8.08~8.12), 5기(8.22~8.26)
  - \* 집합교육 추진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방법 변동 가능
- 교육내용 : 5대 핵심가치 교육을 통한 국공립 신임원장 역량 강화

시간	1일차 (공공성, 개방성)	2일차 (전문성)	3일차 (안전성, 투명성)	4일차 (투명성)
09:30~10:00	준비 및 접수			
10:00~11:00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원장 리더십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11:00~12:00			및 친환경급식관리	재무회계관리1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4:00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 사업 이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어린이집
14:00~15:00			어린이집 운영평가	노무관리
15:00~16:00	부모 소통, 지역사회협력			
16:00~17:00				

※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자 모집시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 부여 예정

□ **교육핵심가치**

- (공공성)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사업 이해
-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 (전문성) 운영자의 리더십과 영유아지도를 위한 보육 전문성 강화
- (안전성)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보육안전성 확보
- (개방성) 물리적 환경 구성과 부모참여를 통한 보육개방성 확대

# 참고

##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직무교육 (23시간)

핵심 가치	주 제	세 부 내 용	시간
계			23
공공성	•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 보육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보육정책 현안 숙지	2
	•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사업 이해	•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영유아 보육법과 보육지침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	2
투명성	•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	2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전산실습	•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관리는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적용	2
	• 어린이집 운영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능력	2
	• 노무관리	• 어린이집 노무 관리	2
전문성	• 원장 리더십 - 리더십의 이해 - 감성 리더십 - 보육현장에서의 리더십	• 리더십의 개념, 구성요소, 유형을 이해 • 감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알 • 감성 리더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실천 • 보육현장에서 감성리더십을 발휘	2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 표준보육과정 총론 -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 보육과정 운영지원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기초를 이해 • 0-1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 2세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3
안전성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안전 실천 • 친환경 먹거리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영유아의 친환경 먹거리 먹기 실천	2
	•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 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2
개방성	• 부모 소통 및 지역사회협력 - 또 하나의 부모 '어린이집'	•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열린 보육기관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관별 프로그램 및 환경을 구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	2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하여 출산을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08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업량 : 320개소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2,000천원 / 인
  - 추가반 운영비 : 월 600천원 / 반
  -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61천원 / 인
  - 조리원 인건비 : 월 600천원 / 인
- 총사업비 : 28,85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20	28,858,968	-	7,945,881	20,913,087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1,319,392	26,850,960	25,609,464	28,858,968
도비	21,971,401	7,111,158	6,914,362	7,945,881
시군비	59,347,991	19,739,802	18,695,102	20,913,087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중복 불가
- 참여 기본요건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이 A등급
  -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A등급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
    - \* 2021년, 2022년 한시적용(기준 :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제외대상
  - 공고일이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 ※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처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제외
  -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총 합계 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선정

구 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55)	맞춤형 보육지원 (25)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인프라·특성화 (45)	운영기간·정원충족 (30)	기타 심사기준 (15)

※ [붙임 1] 세부 선정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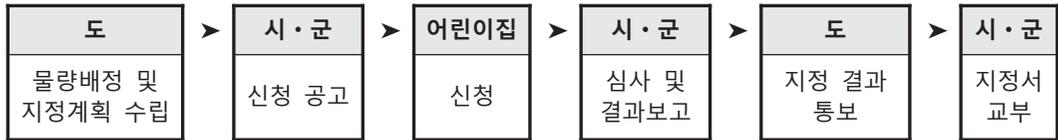
- 신규지정 시 공고일 기준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에 따라 지정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구 분	300명 미만	300명이상	7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정 가능 개소 수 (기 지정 포함)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 1순위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미설치된 행정동 소재 어린이집
- 2순위 : 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0세아 보육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선정 및 지정절차



※ 운영 현황에 따라 연 2~3회 신규 지정

## 나.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 입소기준 : 입소월 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반 구성 가능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 ※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사후관리

- 홍보 : 도, 시·군을 통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지원
- 표창 : 우수 보육교직원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 교육 및 컨설팅 : 우수 어린이집 원장 컨설팅 및 원장 자율모임 공유
- 모니터링 : 신규 및 기존 어린이집 대상 연1회 실시
  - 제외대상, 운영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등 보육품질관리 확인

## 다. 지원내용 및 기준

###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단가	세 부 사 항
추 가 반 보육교사 인 건 비	2,0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불가)의 기본급 보조</li> <li>※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li> </ul>
추 가 반 운 영 비	600천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퇴직적립금</li> <li>추가반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의 제수당,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li> <li>※ 추가반 보육교사 배치에 따른 비용 우선사용 원칙</li> </ul>
야간연장 추 가 반 근무수당	461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연장반 0세아 3명 포함 총4명 이상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포함), 야간연장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의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수당</li> <li>※ 보건복지부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동일 기준</li> <li>※ 야간연장보육 미지정의 경우도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전산상 추가반 미생성 → 시군확인 후 추가반 지급)</li> </ul>
조 리 원 인 건 비	6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li> <li>※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li> </ul>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월30일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월31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

※ 예) 신규지정 당시 0세 5명, 1세 8명, 2세 7명 재원 중일 경우 0세반 3개반, 1세반 3개반이 구성된 월부터 지원, 2세반 아동은 신규지정된 익년 2월28일까지 퇴소 완료

※ 신규지정된 익년 2월28일까지 2세반 이상 아동 퇴소 미완료시 3월부터 퇴소 완료까지 지원 중단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운영비는 일할지급 (지원단가 ×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 1세·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중단,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가 없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 라.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 ○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사유 외)을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세부기준(최근 3년간)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 (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인가변동사항 시·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단, 평가 후 A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 \* 평가주기 조정에 따른 평가소요 기간 (6개월~1년 내외)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가제 D등급 (2022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평가 참고)
- 시·군 모니터링 결과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율 50% 미만시
- 지원조건 미충족 및 아동 감소 등으로 3월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
- 지정취소 확정 후 도에 결과 보고 및 지정서 회수폐기하고 시스템 정비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 ※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취소 시 적용제외
- 취소일이 속하는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월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기준 준수
  -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A, B, C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운영포기

-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운영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시·군에 제출하고 이후 지정취소와 동일 적용

**[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배점 기준 (증빙)	비고
맞춤형 보 육지원 (25)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80% 이상~	15		○ 별도 증빙자료 첨부
		. 70% 이상~80% 미만	13		
		. 60% 이상~70% 미만	11		
		. 50% 이상~60% 미만	9		
		. 50% 미만	7		
	야간연장보육 지정 (10점)	. 지정	10		
	. 미지정	5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10점)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10년 미만	8		
		. 3년 이상~5년 미만	6		
		. 3년 미만	4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70% 이상	10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 간 이수 담임교사 비율(원장 포함) (10점)	. 80% 이상	10		
		. 70% 이상~80% 미만	8		
		. 60% 이상~70% 미만	6		
		. 50% 이상~60% 미만	4		
. 50% 미만		2			
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30점)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5점)	. 7년 이상	15		
		. 5년 이상~7년 미만	12		
		. 3년 이상~5년 미만	9		
		. 3년 미만	6		
	정원충족률 * 공고일 전 6개월 평균 (15점)	. 80% 이상~	15		
		. 75% 이상~80% 미만	12		
		. 70% 이상~75% 미만	9		
		. 70% 미만	6		
기타 (15점)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2021년 CIS 회계보고 건수 (10점)	. 12건 이상	10		○ 21년 운영 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보고건수 × 12 / 운영월
		. 9건 이상	7		
		. 6건 이상	4		
	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	. 지정	5		
		. 미지정	3		
합계			100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0세반> <혼합반 : 0세아, 1세아 각 1명시 또는 0세아만 1명 있을시>

아동수	기존 1:3 보육 반 수 (a)	전용 1:2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3명	1	2	1	
4명	2	2	1	
5명	2	3	1	
6명	2	3	1	
7명	3	4	1	
8명	3	4	1	
9명	3	5	2	
10명	4	5	2	
11명	4	6	2	
12명	4	6	2	
13명	5	7	2	
14명	5	7	2	
15명	5	8	3	
16명	6	8	3	
17명	6	9	3	
18명	6	9	3	
19명	7	10	4	
20명	7	10	4	

<1세반> <혼합반 : 1세아만 1명 있을시> <야간연장반 : 0세아 3명 이상시>

아동수	기존 1:5 보육 반 수 (a)	전용 1:3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4명	1	2	1	
5명	1	2	1	
6명	2	2	1	야간연장 추가반의 경우 국비 2명 지원시 미지원 1개반 1:4 허용
7명	2	2	1	
8명	2	3	1	
9명	2	3	1	
10명	2	3	1	1개반 1:4 허용

- 예1)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7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2)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10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3) 야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를 포함하여 0,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
- 예4)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 야간연장반 0세아 3명 미만인 경우 1:5 반편성하므로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미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투명한 사용과 올바른 회계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지원 및 교육운영으로 회계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2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사업개요**

- 교육일정 : 24회 /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방법 변동 가능
- 교육대상 : 사용자(어린이집원장), 육종센터장·컨설턴트, 관리자(담당공무원)
- 수행기관 : 도 직접 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 (도비 100%,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맞춤형 교육

□ **사업 추진 안내**

-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 투명한 시스템 사용과 올바른 회계운영 지원을 위한 재무회계 전문인력 양성

구 분	컨설팅 전문가 양성교육	시스템 관리자 교육	맞춤형 전산교육
교육횟수	17회 ※ 1-3분기별 4회, 4분기 5회	5회 ※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2회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육대상	보육컨설턴트	시·군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코디네이터
교육과정	3과정 (재무회계, 시스템, 멘토링)	2과정 (시스템, 멘토링)	1과정 (시스템)
교육시간	7시간	5시간	2시간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안정성 강화)  
- 시스템 사용자 급증에 따른 맞춤형 전산교육 확대 및 헬프데스크 운영 강화

▶ 교육일정 : (정기) 매주 목요일, (수시) 시·군, 어린이집 등 사용자 교육 신청시  
▶ 교육내용 : 자료입력 및 서식출력 방법, 자료 활용 방법 등 시스템 교육 기초교육

- 보안 취약점 점검·관리 및 성능 향상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참고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개요

## □ 구성 및 내용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주소 : <http://www.accgg.co.kr> >



## □ 사용 장점

- 모바일 전용 앱(APP) 지원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회계처리 가능
- 계좌 자동연계(핀뱅킹) 구축을 통한 실시간 거래내역 제공
- 어린이집 종이서류(24종)의 전자화로 회계처리의 편리성, 효율성 및 경제성 증대
  - 별도 출력물 없이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관리·보존(비치) 가능
- 회계검증기능 구현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 전 오류여부 자가 검증 가능
- 시스템 사용료 무료 및 거래실적(통장·카드)에 따른 적립금 지급
- 사용자 맞춤형 전산교육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지원(보육컨설팅트)
- 전화·온라인 질의상담 운영 강화로 시스템 사용 불편사항 즉각 해소
  - 전문 상담인력 보강(2명 → 7명) 등 헬프데스크(☎1644-6840) 운영 강화
-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3초 → 0.5초) 및 회계검증기능(사전 오류 확인) 제공
- 보안 취약점 점검·관리 및 성능 향상 등을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안정화

- 지역여건을 감안한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설치로 수요자 중심 육아 환경 조성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 당초 사업기간이 '21년까지였으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미설치시군(동두천) 추가 지원
- 사업량 : 1개소(동두천시)
- 선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미설치 지역 우선 지원

시군 수요조사 및 선정(도) → 예산지원(도→시군) → 대상지 설치 및 리모델링(시군)

-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유휴시설 등을 활용(리모델링) 하여 아이사랑놀이터 조성 및 부모육아 지원
  - \* 실내놀이터 이용, 장난감 대여, 놀이지도 및 육아상담 서비스 등 실시
  - 지원내용 : 100만원/㎡, 개소당 300㎡(바닥면적 기준)까지 최대 3억원

## □ 추진성과

- 정책목표 : 민선7기내 아이사랑놀이터 110개소 이상으로 확대
  - 기설치 현황( '21.12월기준) : 30개 시·군, 110개소
  -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아이사랑놀이터 기능 강화

# 참고

## 아이사랑놀이터 현황 및 연도별 설치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계	아이사랑놀이터			연도별 설치계획				
		도비지원 기준(~'18년)	자체설치	유사시설 <sup>1)</sup>	계	'19	'20	'21	'22
합 계	111	31	26	31	23개소 49.9억	7개소 15억	9개소 20.5억	6개소 11.4억	1개소 3억
도직접	1	1							
남 부	79	25	17	23	14개소 31.7억	3개소 7억	7개소 19.3억	4개소 5.4억	
수원시	9	4	5						
성남시	14	3		9	2	1개소, 25억	1개소, 3억		
용인시	3			3					
부천시	5	3			2		1개소, 3억	1개소, 1.5억	
안산시	3	1			2	1개소, 3억	1개소, 3억		
안양시	1	1							
화성시	7	2	5						
평택시	3	1	1		1			1개소, 1.1억	
시흥시	4	1	2	1					
광명시	2			2					
김포시	1		1						
군포시	4			2	2		1개소, 13억	1개소, 1.6억	
광주시	1			1					
이천시	2	1		1					
오산시	6	4	1		1		1개소, 3억		
안성시	1	1							
의왕시	3			2	1		1개소, 3억		
하남시	3		1	2					
여주시	2		1		1		1개소, 3억		
양평군	3	1			2	1개소, 1.5억		1개소, 1.2억	
과천시	2	2							
북 부	31	5	9	8	9개소 18.2억	4개소 8억	2개소 1.2억	2개소 6억	1개소 3억
고양시	9	1	8						
남양주	7	1		5	1		1개소, 0.8억		
의정부	3	1			2	1개소, 3억		1개소, 3억	
파주시	2	1		1					
양주시	1				1	1개소, 0.6억			
구리시	3	1	1		1		1개소, 0.4억		
포천시	3			1	2	1개소, 3억		1개소, 3억	
동두천	1				1				1개소, 3억
가평군	1				1	1개소, 1.4억			
연천군	1			1					

1) 유사시설 : 아이랑카페, 자유놀이실, 장남감도서관, 놀이터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영유아 및 부모가 방문하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 2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2-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부모(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 등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환경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등 4개 영역)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 제외대상 : '21년 열린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 시설 등

○ 사업량 : 3,794개소

- (전체 10,168개소 - 열린어린이집 2,593개소)의 50% 이상 모니터링

○ 사업내용

- 점검지표 : 15개 지표(건강 3, 안전 4, 급식 4, 위생 4)

- 점검방법 : 방문일정 사전협의, 1일 1개소 원칙, 급식시간 포함 약 3시간 등

- 구성방법 : 2인 1조(부모 및 전문가 1:1)

- 주요역할 : (부 모)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점검

(전문가) 문서·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안전관리 영역 점검

- 결과보고 : 운영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보고, 영유아 부모에게 공지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1,850,919	732,600	491,313	627,006
국비	932,700	366,300	248,400	318,000
도비	463,229	183,149	122,828	157,252
시군비	454,990	183,151	120,085	151,754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 향후계획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재원아동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3회(역량강화교육 2, 평가회 1)

○ 부모모니터링단 현장방문 및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 병행 실시

시군	전체 어린이집 (A)	열린 어린이집 (B)	사업량 (A-B/50%)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0,168	2,593	3,794	627,006	318,000	157,252	151,754
수원시	900	148	376	59,000	29,500	14,750	14,750
용인시	796	71	363	57,200	28,600	14,300	14,300
성남시	551	131	210	34,424	17,212	8,606	8,606
화성시	819	140	340	55,000	27,500	13,750	13,750
부천시	522	154	184	31,200	15,600	7,800	7,800
안산시	429	126	152	24,328	12,164	6,082	6,082
평택시	413	124	145	24,816	16,905	6,704	1,207
안양시	383	104	140	23,412	11,706	5,853	5,853
시흥시	479	118	180	29,988	14,994	7,497	7,497
김포시	438	88	175	28,612	14,306	7,153	7,153
광주시	316	171	73	18,360	9,180	4,590	4,590
광명시	220	65	78	12,700	6,350	3,175	3,175
하남시	252	60	96	15,912	7,956	3,978	3,978
군포시	207	62	73	13,004	6,502	3,251	3,251
오산시	238	89	75	11,628	5,814	2,907	2,907
이천시	156	42	57	9,640	4,820	2,410	2,410
안성시	157	58	50	8,264	4,132	2,066	2,066
의왕시	124	44	40	6,732	3,366	1,683	1,683
양평군	48	29	10	1,380	690	345	345
여주시	66	34	16	2,602	1,301	651	650
과천시	48	16	16	3,060	1,530	765	765
고양시	676	146	265	43,452	21,726	10,863	10,863
남양주시	583	162	210	33,816	16,908	8,454	8,454
파주시	393	107	143	23,860	11,930	5,965	5,965
의정부시	369	64	153	24,780	12,390	6,195	6,195
양주시	213	74	70	12,240	6,120	3,060	3,060
구리시	140	57	42	7,652	3,826	1,913	1,913
포천시	91	56	18	2,600	1,300	650	650
동두천시	80	20	30	5,052	2,526	1,263	1,263
가평군	34	14	10	1,680	840	420	420
연천군	27	19	4	612	306	153	153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593개소 \* 전체 10,168개소의 25.5%

구분	계	가정	국공립	민간	직장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	협동
열린	2,593	1,064	843	588	63	21	12	2
전체	10,168	5,199	1,205	3,247	290	101	60	66

○ 지정기간 : ‘21.11.1. ~ ’ 22.10.31.(1년)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요건 : 5개 항목

- ① 공간 개방성 : 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② 참여성 : 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 참관 등
- ③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④ 다양성 : 부모참여활동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 및 협력활동 등
- ⑤ 시군 자체 선정기준 등

※ 배점 : 개방성(30점), 참여성(40점), 지속가능성(10점), 다양성(5점), 시군 자체(15점)

※ 영역별 최소 점수 : 개방성 (20점), 참여성(30점), 지속가능성(5점), 다양성(3점)

○ 지원내용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에서 제외(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같음)

※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실태·점검·조사 가능하며, 민원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도·점검 대상임

□ **향후계획**

○ ‘22년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7월, 12월)

○ ‘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확정 : ‘22. 10월

## 참고

## 시군별 열린어린이집 선정현황

(단위 : 개소, %)

시군	전체 어린이집	유 형								선정률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0,168	2,593	843	12	21	588	1,064	2	63	25.5%
수원시	900	148	25	0	0	27	95	0	1	16.4%
용인시	796	71	27	1	0	21	20	0	2	8.9%
성남시	551	131	35	1	1	13	78	0	3	23.8%
화성시	819	140	58	0	0	36	46	0	0	17.1%
부천시	522	154	44	1	5	23	77	0	4	29.5%
안산시	429	126	38	0	2	53	28	0	5	29.4%
평택시	413	124	42	0	0	33	48	0	1	30.0%
안양시	383	104	17	0	0	19	68	0	0	27.2%
시흥시	479	118	61	2	2	18	31	0	4	24.6%
김포시	438	88	33	0	0	23	31	0	1	20.1%
광주시	316	171	26	0	2	65	78	0	0	54.1%
광명시	220	65	28	0	0	11	24	1	1	29.5%
하남시	252	60	33	0	0	15	10	0	2	23.8%
군포시	207	62	22	1	0	6	31	0	2	30.0%
오산시	238	89	33	0	1	11	43	0	1	37.4%
이천시	156	42	14	0	0	20	4	0	4	26.9%
안성시	157	58	13	0	1	19	25	0	0	36.9%
의왕시	124	44	20	0	1	7	16	0	0	35.5%
양평군	48	29	11	1	1	11	5	0	0	60.4%
여주시	66	34	5	2	0	18	8	0	1	51.5%
과천시	48	16	12	0	0	1	2	0	1	33.3%
고양시	676	146	58	0	0	18	62	0	8	21.6%
남양주시	583	162	62	1	3	19	75	0	2	27.8%
파주시	393	107	27	0	0	30	44	0	6	27.2%
의정부시	369	64	25	0	1	14	24	0	0	17.3%
양주시	213	74	25	0	0	12	31	0	6	34.7%
구리시	140	57	11	0	0	10	36	0	0	40.7%
포천시	91	56	17	0	0	23	14	1	1	61.5%
동두천시	80	20	8	1	0	5	6	0	0	25.0%
가평군	34	14	6	0	0	5	0	0	3	41.2%
연천군	27	19	7	1	1	2	4	0	4	70.4%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모든 어린이집 10,136개소(' 21년 12월말)

현원 100인 미만			현원 100인 이상		
소계	50인 미만	50~99인	소계	100~199인	200인 이상
9,638	8,031	1,607	498	451	47

○ 사업내용

- (현원 100인 이상) 영양사 1인 전담 관리
  - \*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인접 시군의 2개 이내 공동관리 가능
- (현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조리사 배치
- (보존식 보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
  - \*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현장학습 등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 및 동의

**□ 향후계획**

- 현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배치·관리
- 현원 100인 미만 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 동·하절기 급식·위생 전수점검 실시(7월, 11월)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고관리 > 식중독 / 급식 사고 등록

경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약처(도 식품안전과)
- (설치) 31개소 (기능) 센터 등록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2-4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3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안전용품 장비 등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인건비 지원 시설)
- 사업량 : 28개 시군 93개소(증개축 1, 개보수 36, 장비 56)
  - ※ 수원, 가평, 연천 등 3개 시군 사업대상 없음
- 사업비 : 1,184,104천원(국 594,052, 도 296,026, 시군 294,026)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사업내용

구분	단가	지원대상
증개축	최대 184,404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개보수	최대 30,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장애아 개보수	최대 30,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중 장애아 전문
장비비	최대 2,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내용 연수 5년 이상, 단가 5만원 이상 물품
장애아 장비비	20인미만 : 최대 3,000천원 20인이상 : 최대 4,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중 장애아 전문 및 통합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7,017,066	3,291,991	2,540,971	1,184,104
국비	3,538,952	1,655,500	1,289,400	594,052
도비	1,754,264	823,000	635,238	296,026
시군비	1,723,850	813,491	616,333	294,026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 행정사항

- 사업대상 및 내용 등 변경사항은 수시 신청·승인(시군 → 도)

**참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

시군	사업량(개소)				소요예산 (천원)
	계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b>계</b>	<b>93</b>	<b>1</b>	<b>36</b>	<b>56</b>	<b>1,184,104</b>
고양시	4		1	3	30,000
용인시	4		1	3	35,200
성남시	6		1	5	44,000
부천시	4	1	2	1	222,404
화성시	3		2	1	62,000
안산시	2		2		44,000
남양주시	4		2	2	64,000
안양시	4		2	2	64,000
평택시	1		1		10,000
시흥시	3		2	1	37,000
파주시	3		1	2	10,000
의정부시	3			3	6,000
김포시	1		1		30,000
광주시	3		1	2	24,800
광명시	1		1		30,000
군포시	4		2	2	47,000
하남시	4		1	3	36,000
오산시	5		2	3	68,000
양주시	4		1	3	30,000
이천시	4		1	3	38,000
구리시	2			2	3,540
안성시	4		1	3	28,000
포천시	4		1	3	36,000
의왕시	3		2	1	46,000
양평군	4		1	3	36,000
여주시	3		2	1	56,760
동두천시	2		1	1	18,000
과천시	4		1	3	27,400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으로 '19. 6. 12.부터 의무평가제 시행

###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3단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평가등급 : 4등급 (A, B, C, D)
- 평가주기 : (A·B등급) 3년, (C·D등급) 2년

### □ 연도별 추진실적

- 평가(인증) 현황

('21.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

연도별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 (인증) 율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B)	평가인증률(%) (B/A)×100	평가어린이집수 ** (C)	평가율(%) (C/A)×100
2019년	경기도	11,305	87.0	9,135	80.8	706	6.2
	전 국	37,371	85.9	30,061	80.4	2,070	5.5
2020년	경기도	10,761	82.8	7,206	67.0	1,702	15.8
	전 국	35,352	87.0	23,909	67.6	6,844	19.4
2021년	경기도	10,136	89.3	6,265	61.8	2,783	27.5
	전 국	33,246	92.3	18,618	56.0	12,069	36.3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연도별 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 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

- 평가결과 확정 현황

('21.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연도별	구 분	평가결과확정 어린이집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20년	경기도	1,702	1,032	5,123	123	34
	전 국	6,844	3,997	2,144	525	178
2021년	경기도	2,783	1,865	672	185	61
	전 국	12,069	7,616	3,340	788	325

## 참고

## 시·군별 평가(인증)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B)	평가인증율 (B/A) × 100	평가 어린이집수**(C)	평가율 (C/A) × 100
경 기 도	10,136	6,265	61.8	2,783	27.5
수 원 시	896	600	67.0	224	25.0
성 남 시	546	358	65.6	147	26.9
고 양 시	671	415	61.8	177	26.4
부 천 시	518	370	71.4	123	23.7
안 양 시	380	283	74.5	65	17.1
안 산 시	427	260	60.9	133	31.1
용 인 시	793	493	62.2	223	28.1
의정부시	369	213	57.7	107	29.0
남양주시	583	344	59.0	157	26.9
평택시	414	213	51.4	136	32.9
광명시	220	154	70.0	58	26.4
시흥시	479	269	56.2	148	30.9
군포시	207	140	67.6	58	28.0
화성시	815	444	54.5	256	31.4
파주시	392	234	59.8	107	27.4
이천시	155	111	71.6	35	22.6
구리시	140	99	70.7	33	23.6
김포시	439	249	56.7	113	25.7
포천시	92	64	69.6	20	21.7
광주시	316	178	56.3	101	32.0
안성시	159	96	60.4	39	24.5
하남시	251	123	49.0	83	33.1
의왕시	123	73	59.3	43	35.0
양주시	211	123	58.3	60	28.4
오산시	237	156	65.8	70	29.5
여주시	66	45	68.2	14	21.2
양평군	47	36	76.6	9	19.1
동두천시	79	49	62.0	18	22.8
과천시	51	32	62.7	9	17.6
가평군	34	22	64.7	10	29.4
연천군	26	19	73.1	7	26.9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21. 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 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 수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평가 컨설팅 운영·지원 및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보육품질관리 제고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 사업주관 : 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운영인력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35명
  - 도 2명(경기·경기북부 육아중), 시·군 33명(30개 시·군 육아중)
  -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미배치 : 2개 시·군(동두천, 연천)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운영 및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어린이집 평가 사전·사후 컨설팅 운영 및 교육 추진
  - (사전) 평가절차방법, 지표교육, (사후) 한국보육진흥원 '지역자원가' 참여

## □ 운영방향

- **(재무회계 전문컨설팅 확대)** 재무회계·시스템 컨설팅의 참여 대상 선정 권고 및 어린이집 원장 인식 개선을 통한 본격적인 확대(60%) 추진
- **(평가컨설팅 축소 추진)** 평가 컨설팅의 일정 비율(40%) 지속 추진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재무회계·시스템 컨설팅 마중물 역할
- **(도-시군 컨설턴트 체계 구축)** 도 컨설턴트의 모니터링, 사례집 발간 등 역할 정립으로 일관성 있는 컨설팅 추진
- **(시군별 전담코디 지정제를 통한 매칭)** 보육컨설턴트의 보육컨설팅 추진 후, 밀착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과 코디의 매칭으로 올바른 시스템 사용 확대

## □ 운영체계

도	시 · 군	육아종합지원센터
<p>▶사업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li> <li>-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li> <li>- 운영매뉴얼 제작 및 사업홍보 등</li> </ul> <p>▶보육컨설팅 품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컨설턴트 및 관리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li> <li>- 보육코디 사업 운영</li> </ul>	<p>▶사업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종합세부실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li> <li>-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li> <li>- 예산변경 승인 및 사업비 정산</li> <li>- 어린이집과의 컨설팅 연계 및 사업 홍보</li> </ul>	<p>▶도(남·북부) 육아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턴트 미배치 시·군 지원</li> <li>- 신규 컨설턴트O.T, 교육, 간담회 사례집 발간 등</li> <li>- 시·군 컨설팅 모니터링</li> </ul> <p>▶시군 육아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실행계획서 수립</li> <li>- 보육컨설턴트 채용 관리</li> <li>-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재무회계, 시스템, 평가)</li> <li>-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li> </ul>

## □ 운영기준

### ○ 컨설턴트 채용기준

- (무기계약)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채용 시 무기계약직 채용원칙
  - ※ 다만, 인력운영은 육종센터장 권한사항으로 계약직(24개월 이내) 채용 후 자체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음
- (급여기준) 무기계약직 봉급표 ‘1~10호봉’ (일반직공무원 8급 기준적용)
  - ※ 시·군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내(1~10호봉)”에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채용 시에는 6호봉 이하로 적용함

### ○ 사업비 집행기준

- (인건비) 기본급, 수당(정액수당, 기타수당 등),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 ※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조정 집행할 수 있음(단,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외)
  -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액 2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운영비) 여비, 교재·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
  - ※ 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 및 시설개선비’로 사용 불가
    - 다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구입은 가능하며, 50만원 이상의 물품 필요 시 ‘임차’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총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35명	2,238,264	1,182,132	1,056,132	
도 육종센터	2명	126,000	126,000	-	민간위탁금 (도 100%)
시·군 육종센터	33명	2,112,264	1,056,132	1,056,13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 50%, 시·군 50%)

## □ 세부추진계획

-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운영 및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60%이상)
  - 주요내용 : 재무회계 이론 및 어린이집 회계실무 운영, 시스템 활용 등
  - 주요대상 : 어린이집 운영 초기 어린이집(신규, 대표자 변경 등)  
시·군별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시스템 사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 등
  - ※ 시·군별 재무회계 전문컨설팅 우선 참여대상 어린이집 선정 권고 안내
  - ※ "재무회계 컨설팅의 60%"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마련 예정

### ☞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및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성 제고

- 어린이집 평가 사전·사후 컨설팅 운영 및 교육 추진(40%미만)
  - 주요내용 : 보육계획, 보육환경 조성, 상호작용 등 평가관련 지표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 대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등)
  - 주요대상 : 보육진흥원의 평가 주기에 따른 평가대상 어린이집

### ☞ 어린이집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도 컨설턴트의 역할 정립으로 도·시·군 컨설턴트 업무체계 구축
  - 시·군 컨설팅 추진 관련 모니터링 및 소그룹 스터디, 사례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사례집 발간으로 보육컨설팅 현장 지침서로 활용
- 시스템 초기 사용자 맞춤형 현장실습을 위한 보육코디 밀착 지원
  - 주요내용 : 도 시스템 사용 기초 및 월말 회계보고 등 활용법 교육
  - 운용방법 개선 : (사용자별 지원횟수) 1회 → 6 ~ 7회  
(대상선정) 보육코디 직접 선정 → 컨설턴트 매칭

###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사용 지원으로 사용 확대

# 참고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시.군명	어린이집 수 (‘21.12월말)	’22년 운영계획			비 고
		개소 수	배치인원	운영방식	
<b>합 계</b>	<b>10,136</b>	<b>32</b>	<b>35</b>		
<b>소 계</b>	<b>7,539</b>	<b>23</b>	<b>25</b>		
道(남부)	-	1	1	계 약 직	
수 원 시	896	1	1	무기계약직	육아종 2개소 운영
		1	1	계 약 직	
용 인 시	793	1	2	무기계약직1, 계약직1	2명 배치
성 남 시	546	1	1	계 약 직	
부 천 시	518	1	1	무기계약직	
화 성 시	815	1	2	무기계약직1, 계약직1	2명 배치
안 산 시	427	1	1	계 약 직	
안 양 시	380	1	1	무기계약직	
평 택 시	414	1	1	무기계약직	
시 흥 시	479	1	1	무기계약직	
김 포 시	439	1	1	무기계약직	
광 주 시	316	1	1	무기계약직	
광 명 시	220	1	1	계 약 직	
군 포 시	207	1	1	무기계약직	
하 남 시	251	1	1	계 약 직	
오 산 시	237	1	1	무기계약직	
이 천 시	155	1	1	계 약 직	
안 성 시	159	1	1	계 약 직	
의 왕 시	123	1	1	무기계약직	
양 평 군	47	1	1	계 약 직	
여 주 시	66	1	1	계 약 직	
과 천 시	51	1	1	무기계약직	
<b>소 계</b>	<b>2,597</b>	<b>9</b>	<b>10</b>		
道(북부)		1	1	계 약 직	
고 양 시	671	1	2	계 약 직	2명 배치
남양주시	583	1	1	무기계약직	
파 주 시	392	1	1	무기계약직	
의정부시	369	1	1	무기계약직	
양 주 시	211	1	1	무기계약직	
구 리 시	140	1	1	계 약 직	
포 천 시	92	1	1	무기계약직	
동두천시	79	-	-	-	
가 평 군	34	1	1	계 약 직	
연 천 군	2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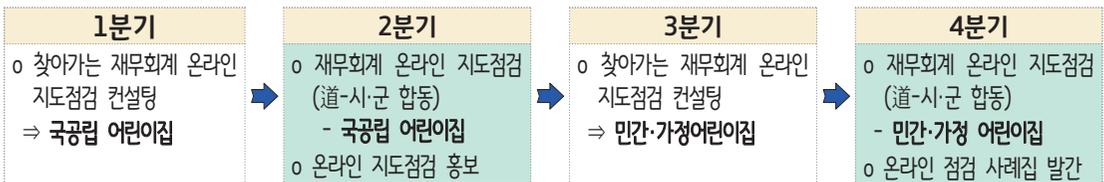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보육 예산('22년 3조5천6백억원) 관리 효율성 및 어린이집의 보육 집중도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집 현지조사 지침(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등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찾아가는 경기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 컨설팅

- 대상 : 31개 시·군(수요조사 시 요청 시군)
- 일정 : 1분기(국공립), 3분기(민간·가정)

▶ 道-시군 재무회계 온라인 합동점검 추진

- 대상 : 31개 시·군(수요조사 시 요청 시군)
- 일정 : 2분기(국공립), 4분기(민간·가정)

□ **사업 추진 안내**

- (조사기간) 2022. 4. 1. ~ 12. 31.
- (조사대상) 정기조사 대상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필수)
  - 상반기 :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 하반기 : 민간·가정어린이집(정기조사 대상 등) 중 대상 선정
- (조사방법) **재무회계 관리(온라인 지도점검) + 그 외 6개 분야(현지조사)**  
 ※ 기존 지도점검과 동일 :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 사전 서면 통보

【당 초】

【변 경】

조사방식	조사방식		조 사 분 야		
	온라인	재무회계 관리			
7개 분야 현지조사	현지	① 설치·운영 일반	②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③ 급식·위생·안전 관리	④ 통학차량 관리
		④ 통학차량 관리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⑥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7년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사 업 량 : 9,778개소
- 지 원 액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그 외 어린이집 : 월 10만원
- 총사업비 : 14,88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778	14,888,588	-	3,557,719	11,330,869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5,134,978	14,784,390	15,462,000	14,888,588
도 비	10,680,835	3,497,376	3,625,740	3,557,719
시군비	34,454,143	11,287,014	11,836,260	11,330,869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방법 및 내용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 지급일로 함
  -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 렌탈비 예산지급액 범위내 월별 지급 가능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으로 영아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외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가능하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어린이집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월 지원액 범위 내 집행 원칙으로 할부 등으로도 구입 불가)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 학습, 연구 활동(서적구입 등), 교육, 전문가 자문 등 경비
    - 학습활동과 무관한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교통비 등) 제외
    - 정부 지원받는 교육은 제외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소화설비 등 재난대비 물품, 차량안전설비 등 보호장구, 기타 아동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는 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공제)료 제외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전체 영아반의 아동 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월중에 한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익월부터 미지원
  - 2~3세 혼합반일 경우 미지원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B,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B,C등급) 어린이집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지원대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 부터 미지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미지급
- ※ 범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급

##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② 총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③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

##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ex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

###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프로그램 지원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총원해야 함

###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어린이집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미 증빙 집행액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액을 전액 환수

## 라. 지원 제외

- 지원연도 2년 이내에(2018년 1월 1일 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등에 따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가정·민간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조리원 별도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국·도비) 기지원 중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사 업 량 : 6,135명

○ 지원내용 : 월 300천원 / 1인 / 1개소

○ 사 업 비 : 22,08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135	22,086,000	-	4,996,080	17,089,92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0,261,200	23,612,400	24,562,800	22,086,000
도 비	15,509,520	5,203,440	5,310,000	4,996,080
시군비	54,751,680	18,408,960	19,252,800	17,089,920

## □ 사업 추진 안내

-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이상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 평가등급 공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국·도비) 기지원 중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조리원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조리, 급식 및 위생 관련업무 수행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 지원 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까지 지원

실내 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 사업량 : 10,136개소( '21.12월말 기준)
  - 공기청정기 46,424대(개소별 평균 4~5대)
- 사업내용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공기청정기 1대 지원
- 지원단가 :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렌탈비 : 1대당 월 최대 11천원(연 132천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844,972	6,152,255	6,564,729	6,127,988
도비	5,653,490	1,845,676	1,969,418	1,838,396
시군비	13,191,482	4,306,579	4,595,311	4,289,592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17년부터 지원

□ **행정사항**

- (지원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육실(공동놀이실) 확인
  - ※ 예) 보육실 5실 등록 ⇒ 공기청정기 최대 5대 내에서 신청 가능
- (지원시기)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
  - 어린이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 (지원중단) 공기청정기 설치기준 위반 및 허위신청, 임의로 변경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조치

시군	어린이집 ('21.12월)	소요예산(천원)		
		계	도비	시군비
<b>계</b>	<b>10,136</b>	<b>6,127,988</b>	<b>1,838,396</b>	<b>4,289,592</b>
수 원 시	896	501,600	150,480	351,120
용 인 시	793	500,000	150,000	350,000
성 남 시	546	328,000	98,400	229,600
화 성 시	815	465,432	139,630	325,802
부 천 시	518	277,200	83,160	194,040
안 산 시	427	288,420	86,526	201,894
평 택 시	414	283,800	85,140	198,660
안 양 시	380	238,780	71,634	167,146
시 흥 시	479	306,900	92,070	214,830
김 포 시	439	228,096	68,429	159,667
광 주 시	316	243,461	73,038	170,423
광 명 시	220	116,688	35,006	81,682
하 남 시	251	178,200	53,460	124,740
군 포 시	207	117,663	35,299	82,364
오 산 시	237	161,040	48,312	112,728
이 천 시	155	90,564	27,169	63,395
안 성 시	159	85,668	25,700	59,968
의 왕 시	123	91,000	27,300	63,700
양 평 군	47	33,000	9,900	23,100
여 주 시	66	44,300	13,290	31,010
과 천 시	51	39,000	11,700	27,300
고 양 시	671	401,200	120,360	280,840
남양주시	583	317,328	95,198	222,130
파 주 시	392	206,976	62,093	144,883
의정부시	369	237,000	71,100	165,900
양 주 시	211	117,612	35,284	82,328
구 리 시	140	84,000	25,200	58,800
포 천 시	92	60,060	18,018	42,042
동두천시	79	47,520	14,256	33,264
가 평 군	34	18,480	5,544	12,936
연 천 군	26	19,000	5,700	13,30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을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 부모와 자녀의 역할 정립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
- 사업량 :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30개소(29개 시군\*)
  - \* 센터 미설치 시군(연천, 동두천)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지원
- 총사업비 : 1,02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산출내역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30개소 x 34,000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30	1,020,000	-	510,000	510,000	

※ '22년 지방이양, '26년까지 5년간 국비금액 행안부 보전금으로 충당

- 사업내용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공통부모교육 운영(양육태도 점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 **행정사항**

- 예산편성 및 관리
  - (현행) e나라도움시스템 → (변경) 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식
- 사업지원 및 실적관리
  - 공통부모교육 사업운영안내 보급 : (현행동일)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콘텐츠 개발 보급 : (현행동일)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실적관리 : (현행동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취합 및 보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지원인력(놀이지도사,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균형적인 발달을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30개소(29개 시군, 수원 2개소)
- 사업량 : 60명(놀이지도사 30,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30)
- 총사업비 : 2,511,800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0	2,511,800	-	1,255,900	1,255,900	
놀이지도사	30	1,231,800	-	615,900	615,900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30	1,280,000	-	640,000	6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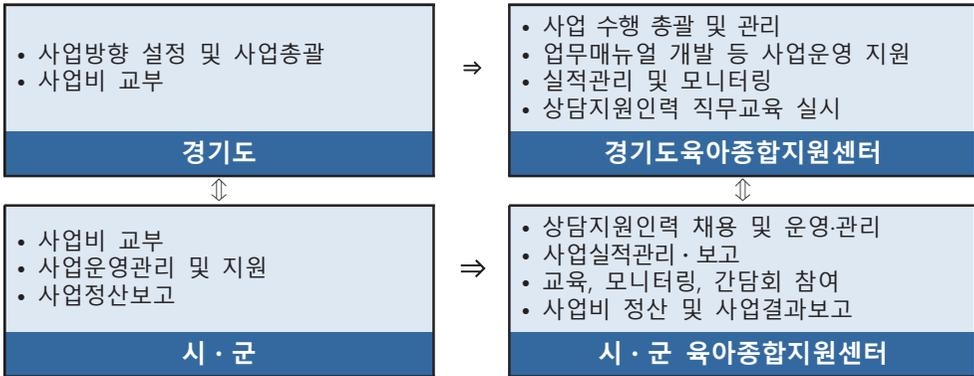
- 사업내용
  - (놀이지도사) 부모·영유아 대상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프로그램 제공
  - (발달지원상담원)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및 교사·부모 상담, 교육 진행

□ **놀이지도사 및 상담원 자격기준 및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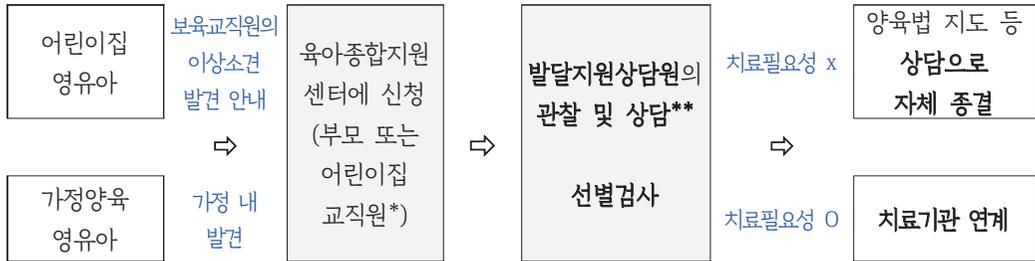
구분	발달지원상담원	놀이지도사	비고
자격기준	아래 2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심리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중 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 1년 이상 경력자* * 채용이 어려울 시, 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 1년 이상 경력은 권고사항 ② 보육관련학과 학사졸업 및 1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전문요원 기준에 준하여 선발(아래 3가지 중 하나 충족) ① 보육교사 1급 ②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③ 보육교사 2급과 보육관련 석사 취득 후 1년 보육업무 ④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보육업무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산출기준	8급 7호봉 참고	8급 1호봉 참고	무경력인 경우
'22년 인건비	월 3,433천원	월 2,745천원	각종수당포함

## □ 추진체계

### ○ 총괄



### ○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업무 체계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원 의뢰

\*\*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발달지원상담원이 신청자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

### <신청방법>

○ 놀이지도사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원 서비스

- **(어린이집에서 신청)**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받은 후, 교사가 지원의뢰서 직접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가정에서 신청)** 보호자가 지원의뢰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신청방법	지원의뢰서(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②연령별 발달 적신호 ③온라인 발달체크리스트 작성 중 1가지 이상 지참 신청)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보호자작성) 작성후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접수 후 서비스 선정 결과 안내 → 선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필요한 경우 선별검사 실시)
------	---

### 3

##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 3-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연 혁**

-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확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0~2세(어린이집 이용)
- 사업량 : 184,781명
- 총사업비 : 1,355,243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4,781	1,355,243,481	1,014,540,000	237,167,608	103,535,873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4,199,264,292	1,469,709,362	1,374,311,449	1,355,243,481
국비	3,047,431,000	1,050,442,000	982,449,000	1,014,540,000
도비	734,871,255	257,199,142	240,504,505	237,167,608
시군비	416,962,037	162,068,220	151,357,944	103,535,873

## □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 일반아동

- 적용 기간 : 2022.1.1.~

(단위 : 원/월)

구분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비 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99,000	570,000	0~2세반 기본 보육시간 (09:00~16:00)보육료로 지원
1세반	439,000	310,000	
2세반	364,000	210,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32,000	622,000	'21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6% 인상
방과후	266,000	530,000	

###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 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 고
지원단가	3,200	4,200	'21년 대비 동결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연 혁**

- 2012년 3월 만 5세, 2013년 3월 만 3~4세 확대 도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 사업량 : 151,217명
- 사업비 : 621,258백만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금 100%)
- 지원내용 : 350천원/인, 월
  - 3~5세 보육료 : 280천원/인, 월( '22. 3월부터 적용)
    - ※ 2022년 3월부터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증액
  - 누리과정 운영비(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 70천원/인, 월
    - ※ 기존 운영비 외 처우개선비 6만원 및 운영비 8,140원 추가 지원
- 총사업비 : 621,258백만원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51,217	621,258,128	-	621,258,128	-	

□ **연도별 예산내역(도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예산액	1,851,839,358	609,323,102	621,258,128	621,258,128	

##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료 : 만3~5세 유아 1인당 280천원/월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인,월

\* '2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추후 처우개선비 누리과정운영비 변경 예정

###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60천원) 포함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만3~5세 외국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 도(시·군)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단,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 사용은 제한

### 3-3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연 혁**

- 2012년 1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사업량 : 14명
- 지원내용 : 월100천원/인
- 총사업비 : 19백만원(교부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교부금	도비	시군비	
계	14	19,000	9,500	2,850	6,65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
계	119,800	50,400	50,400	19,000
교부금	80,900	35,700	35,700	9,500
도비	20,490	8,820	8,820	2,850
시군비	18,410	5,880	5,880	6,650

##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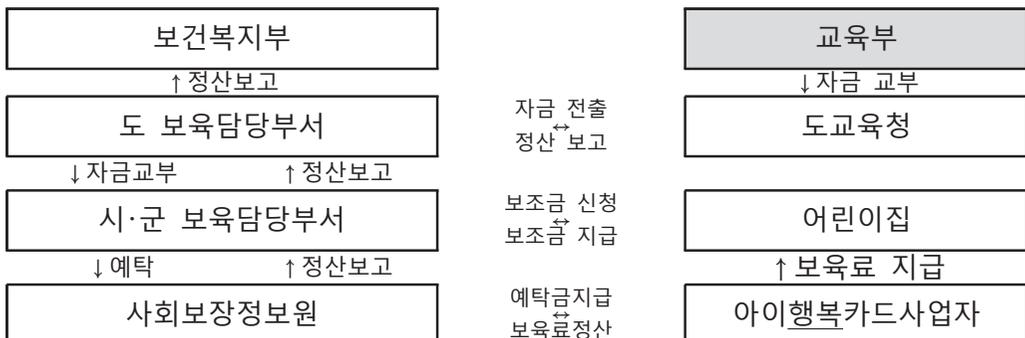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단가

구분	차상위이하 아동	장애아동
예산과목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100(월/인)	266(월/인)
방학중 종일제 보육	200(월/인)	532(월/인)

※ 방학중 종일제 보육료 결제 중 50%는 보조금으로 지원, 보조금 신청 시기는 보육통합시스템상 매년 별도 통보

-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2012년 3월 최초 시행
- 2013년 3월 3~4세까지 확대
- 2018년 3월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통합
- 2018년 3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보육사업안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지원대상 관련사항 보육통합시스템(시·군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활용

- 사업량 : 115,669명
- 지원기준 : 민간 3세 105천원/ 민간4,5세 82천원/ 가정3~5세 10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385	362	38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b>누리차액보육료지원금</b>	<b>105</b>	<b>82</b>	<b>108</b>
부모부담보육료	-	-	-

- 총사업비 : 104,33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5,669	104,336,196	-	25,910,035	78,426,161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7,869,888	103,209,192	100,324,500	104,336,196
도비	76,400,866	25,615,899	24,874,932	25,910,035
시군비	231,469,022	77,593,293	75,449,568	78,426,161

## □ 사업 추진 안내

### ○ 지원방식

-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시 입소일이 신청일

### 3-5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연 혁**

- 2009년 7월 최초 시행,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24~86개월 영유아
- 사업량 : 126,407명
-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단위 : 명, 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	100	156	200
36 ~ 47		129	100
48 ~ 86		100	

- 총사업비 : 330,469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6,407	211,659,864	157,160,000	37,040,478	17,459,38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889,512,210	347,383,660	330,468,686	211,659,864
국비	641,195,000	248,321,000	235,714,000	157,160,000
도비	155,664,639	60,792,140	57,832,021	37,040,478
시군비	92,652,571	38,270,520	36,922,665	17,459,386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아동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156천원	200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6		100천원	

### 다. 지원기간

- 시·군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사·군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바.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 등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예시) '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20.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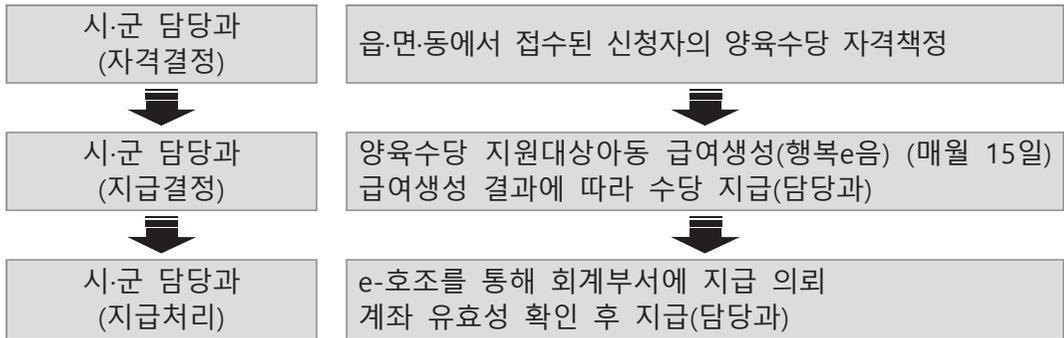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 경우,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중복수급 여부,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조치

##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 처리 절차 개요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 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은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및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에서 서면(우편) 고지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관련근거** : 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제10조

□ **연 혁**

- 2022년 최초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0~1세('22년 출생아부터)
- 사업량 : 75,963명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  
 ※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 총사업비 : 149,776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6,407	149,776,180	112,179,000	26,210,930	11,386,25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149,776,180	-	-	149,776,180
국비	112,179,000	-	-	112,179,000
도비	26,210,930	-	-	26,210,930
시군비	11,386,250	-	-	11,386,250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영아(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나.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지급

- 현금 지급 원칙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 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영아수당 신청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 라. 지급정지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 및 거주불명 등록

### 다. 현장조사(필요시)

- 현장조사 대상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세대를 달리하는 영아수당 신청인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
- 현장조사 수행자  
- 읍면동 영아수당 담당자가 현장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내부 협의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자 및 시군구 드림스타트 담당자에 의뢰하여 현장조사 가능
- 현장조사 절차  
- 영아수당신청 → 현장조사실시확인 → 영아수당접수 → 필요시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3-7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상 운영 지원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6년 ~ (교사 인건비 지원)
- 개편 : 2022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국적 영유아)로 기본보육 이용 외국인 영유아에 한해 지원(어린이집을 기준으로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연장보육·야간연장 등만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외국인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로 고유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입력한 경우를 포함
- 사업량 : 2,057개소, 8,242명
- 지원내용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22천원 운영비 지원
  - 지원받은 운영비 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 등 감면 실시
- 총사업비 : 2,17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8,242	2,175,888		495,210	1,680,678

#### □ 연도별 예산내역(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6,279,888	2,052,000	2,052,000	2,175,888	22년 사업개편
도비	1,372,170	438,480	438,480	495,210	
시군비	4,907,718	1,613,520	1,613,520	1,680,678	

##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예시) 1월 3일(월), 3월 2일(수), 5월 2일(월), 10월 4일(월)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 집행내용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재교구비,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상 120(보육교직원 인건비),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으로 지출 가능

○ 운영기준

-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후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운영비 지급

-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액만큼 외국인 자녀 부모 부담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감면하고, 시군에 분기별 보육료 등 감면 실적 제출

※ (원 칙) 외국인 자녀의 부모 부담보육료를 감면

(예 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수납하거나 시군별 외국인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보육료 감면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서 감면하되, 감면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이 없을 경우는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후 계좌이체내역서 보관)

\* (감면실적 제출 서식 예시)

(단위 : 원)

어린이집명	정원 (명)	현원 (외국인) (명)	외국인 자녀 보육료·필요경비 등 감면 현황					
			성명	나이(만)	국적	부모보육료(A)	실제수납액(B)	감면금액(A-B)
○○어린이집								

○ 지원제외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야간 연장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07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 사업량 : 1,903개소
- 지원내용 : 운영비 월 40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9,13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903	9,134,400	-	2,406,240	6,728,160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7,235,200	8,966,400	9,134,400	9,134,400
도비	7,120,320	2,337,120	2,376,960	2,406,240
시군비	20,114,880	6,629,280	6,757,440	6,728,160

**사업 추진 안내**

- 별도의 야간연장 보육교사 또는 수당형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국비)가 지급되는 달만 운영비 지급  
※ 일할계산 불요, 정액 지급
- 운영비는 야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차량기사의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21개소

○ 지원액

- 운전기사 인건비 : 월 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시

- 교재교구비 : 연 200만원

○ 총사업비 : 34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	348,000	-	93,600	254,4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26,000	330,000	348,000	348,000
도 비	267,000	85,800	87,600	93,600
시군비	759,000	244,200	260,400	254,4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나. 지원요건

- 공통사항
  -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보육
- 운전기사 지원요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제51~53조)
    -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 다.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라. 제외대상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대상
  -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지원시 환수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부터 지원

## 마. 지원중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또는 통학차량 미운영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2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개소당 1명, 월 2,670천원/인
- 총사업비 : 641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0	641,276		260,000	381,27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지원요건
  -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인력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실시

○ 지원단가

- 인건비(월 2,000천원), 4대 보험료(월 200천원), 퇴직적립금(월 170천원), 수당(월 300천원)

○ 지급기준

- 간호인력을 별도채용할 경우에만 지원하되, 신규 채용자는 임면보고 후, 익월부터 지원
  - ※ 지원 요건을 갖추고 월 15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되 사군에서는 인건비(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는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고, 수당은 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 수당의 경우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간호인력 수당” 표시
- 보육교직원 전원 4대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주요역할

- 장애아동 등 대상 건강지도, 응급처치 등 지원

- (건강지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건강지도, 담임교사 대상 보건교육 지원, 원아 대상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업무 지원
- (의료활동) 외상 등 다친 아동 대상 적절한 처치, 응급을 요하는 아동에 대한 응급처치 아동의 투약과 관련한 가정과의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등
  - ※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석션, 위루관 영양공급 등)는 수행 금지
- (건강검사) 아동 건강검진 관리, 신체발달 관련 업무 지원 등

○ 지원제외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또는 간호인력 미채용
  -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지원 제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연 혁**

- 사업시행 : 2013년(경기도 2014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 영아
- 사업량 : 104반(남부 72, 북부 32)
-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구 분	제공기관
대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관련시설
인건비	<b>보육교사</b>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금 75%(3,000원) + 부모부담금 25%(1,000원)] (월 80시간 이용 가능)
주요역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1개반 기준) 인건비·운영비 10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인건비·운영비 70%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구분	관 리 기 관
대상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3명, 북부1명)
인건비	(관리자)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 3. 1.부터 적용
운영비	월 110만원(남부), 70만원(북부)
주요역할	상담, 예약 및 모니터링 등 지원, 관리
비고	20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총사업비 : 4,77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시간제 제공기관	104개반	4,604,215	2,311,000	1,155,496	1,137,719	
시간제 관리기관	2개소4명	150,000	75,000	75,000		국50%:도50%
시간제 인프라구축	2개소	20,000	10,000	5,000	5,000	
		4,774,215	2,396,000	1,235,496	1,142,719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819,926	4,841,280	9,204,431	4,774,215
국비	9,510,000	2,456,000	4,658,000	2,396,000
도비	4,805,026	1,238,570	2,330,960	1,235,496
시군비	4,504,900	1,146,710	2,215,471	1,142,719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 어린이집
    -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관리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li> <li>•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li> <li>•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li> </ul>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li> <li>•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li> </ul>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채용조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li> <li>○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li> <li>○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li> <li>○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li> <li>○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li> <li>○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li> <li>○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li> <li>○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li> </ul>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2015. 1. 1.~)

## 라. 지원 기준

###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li> <li>※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li> <li>※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li> </ul>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li> <li>○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 (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li> <li>-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li> <li>※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li> </ul> </li> <li>○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li> <li>-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li> <li>-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검직 지원 제외)</li> <li>○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li> </ul>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li> <li>○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li> <li>○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li> </ul>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li> </ul>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li> <li>*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li> </ul>

\*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 개시 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반 등록 기준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b>(지원조건)</b>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b>(인건비 지원내용)</b>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3.1일부터 적용
	<b>(운영비 지원내용)</b>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마. 운영 기준

###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기본보육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

### 3) 운영시간

○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 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li> <li>•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li> </ul>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li> <li>•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li> </ul>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9년 7월 ~
-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 2022년 1월 ~ (어린이집 현원 기준별 차등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 운영비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 \* (제외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 \*\* 기본보육 이용 아동에 한해 지원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보육·야간연장 등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량 : 347,390명(정부미지원 258,568명 / 정부지원 88,822명)
- 지원내용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원/인·월
  - \* 운영비 상한선 개소당 월 1,260,000원
- 사업비 : 69,94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급식비	운영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347,390	258,568	69,943,715	20,983,114	48,960,601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55,648,223	42,852,254	42,852,254	69,943,715
도비	46,694,466	12,855,676	12,855,676	20,983,114
시군비	108,953,757	29,996,578	29,996,578	48,960,601

## □ 사업 추진 안내

###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예) 1월 3일(월), 3월 2일(수), 5월 2일(월). 10월 4일(월)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 ○ 급식비 지원(아동 1인당, 1일, 20.3월부터 적용)

- 영아(0~2세) : 2,470원(정산 기준 2,270원)

\* 1,9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유아(3~5세) : 3,070원(정산 기준 2,870원)

\* 2,5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 현원 규모별 운영비 차등지원

(단위 : 원)

구 분	지원단가
급식비	1인당 7,400
운영비	1인당 12,600~14,600 (개소당 최대 1,260천원)
40명미만	1인당 14,600
40명이상~100명미만	1인당 12,600
100명이상	개소당 1,260,000

### ○ 집행내용

- 급식비 :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 기본보육활동비 5,000원 이상 집행 권고

### ○ 집행기준

- 급·간식 재료비의 최저기준 적용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정한 최저기준 금액(아동당 일370원, 월7,400원)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재원아동이 아닌 실제 출석아동을 기준으로

최저기준을 초과 지출하는 것을 권장함 \* 초과지출은 최종 급식비 지원예산 범위내 가능

- 출석아동 감소에 따른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의 사용
  - 출석아동 감소(코로나19 관련 휴원 포함)로 인해 발생하는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은 **당해연도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급·간식 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 \* 운영비, 인건비, 보육활동비 등 급간식 재료비 이외 다른 항목으로 사용 불가
    - \*\* 코로나19 상황 해지이후에도 급간식비 이월 사용 가능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교부)기준
  - 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으로 출석아동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 : 현원 100명 / 긴급보육 30명일 경우 30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월 현원 기준 으로 미지원된 아동수의 급식비를 추가로 교부 가능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지원 아동 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후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급식비와 운영비 각각 입금
- (집행) 보조금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
- (정산) 급식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시군 자율 정산

○ 지원제외

- (급식비, 운영비)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운영비) ‘21.12.31일 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어린이집
  - ※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명단은 관련 팀(보육품질 관리팀)에서 기 통보(보육정책과-95, 2022.1.3.)
  - ※ 신규개원, 휴·폐지 및 대표자 변경 후 재운영하는 경우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가입 및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 단, 신규 개원 및 재운영 익월까지 가입 및 인증 미완료 시 '22년 지원 제외
    - 매월 10일 이후 인증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21년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제외
  -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정원 충족율 85%미만),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지원
- 사업량 : 8,767개소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놀이, 미술, 언어,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평균 100만원
  - \* 시군에서 예산범위, 지원시점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 감안하여 조정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14,421,661	5,050,394	4,643,952	4,727,315
국비	8,428,000	2,871,000	2,754,000	2,803,000
도비	3,941,305	1,356,574	1,281,329	1,303,402
시군비	2,052,356	822,820	608,623	620,913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지원기준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액 전액 환수

## 참고

## 2022년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안)

※ 확정내시 기준(추경 반영 예정) : 4,667,500천원(국 2,803,000, 도 1,297,270, 시군 567,230)

시군	전체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고용보험기금 지원받는시설	사업량 (개소)	소요예산 (천원)
<b>계</b>	<b>9,048</b>	<b>8,802</b>	<b>35</b>	<b>8,767</b>	<b>4,667,500</b>
수원시	824	812		812	432,304
고양시	592	572	6	566	301,335
용인시	716	697	7	690	367,352
성남시	505	488	4	484	257,679
부천시	493	478		478	254,484
화성시	700	681	2	679	361,496
안산시	393	382		382	203,375
남양주시	501	489		489	260,341
안양시	348	344		344	183,144
평택시	349	328	3	325	173,028
시흥시	417	403	3	400	212,958
파주시	341	331		331	176,222
의정부시	320	311		311	165,575
김포시	362	353	2	351	186,870
광주시	279	268	1	267	142,149
광명시	212	210		210	111,803
군포시	198	193		193	102,752
하남시	206	198		198	105,414
오산시	226	220	4	216	114,997
양주시	183	181	1	180	95,831
이천시	146	143		143	76,132
구리시	132	129		129	68,679
안성시	135	132		132	70,276
포천시	84	83		83	44,189
의왕시	116	115		115	61,225
양평군	45	45		45	23,958
여주시	59	56		56	29,814
동두천시	67	64		64	34,073
가평군	32	31	1	30	15,972
과천시	41	40	1	39	20,763
연천군	26	25		25	13,310

농어촌소재,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영유아 통학 편의 증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1,240개소, 1,847대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1,224개소, 1,823대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6개소, 24대
- 사업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지원
- 지원기준 :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 지원방법 : 반기별로 분할 지원
  - ※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13,753,237	4,648,664	4,564,966	4,539,607
국비	7,876,000	2,591,000	2,650,000	2,635,000
도비	3,677,428	1,220,750	1,231,902	1,224,776
시군비	2,199,809	836,914	683,064	679,831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해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액 전액 환수

## 참고

## 2022년 차량운영비 지원 계획(안)

※ 확정내시 기준(추경 반영 예정) : 4,433,676천원(국 2,635,000, 도 1,214,568, 시군 584,108)

시군	농어촌소재	장애아전문	사업량(대)	소요예산(천원)
<b>계</b>	<b>1,823</b>	<b>24</b>	<b>1,847</b>	<b>4,433,676</b>
수 원 시	1		1	2,400
고 양 시	58	1	59	141,628
용 인 시	197	2	199	477,695
성 남 시			0	-
부 천 시		2	2	4,801
화 성 시	113	2	115	276,055
안 산 시	1	4	5	12,002
남 양 주 시	290		290	696,138
안 양 시		1	1	2,400
평 택 시	134		134	321,664
시 흥 시		1	1	2,400
파 주 시	155		155	372,074
의 정 부 시			0	-
김 포 시	56		56	134,427
광 주 시	224	1	225	540,107
광 명 시			0	-
군 포 시			0	-
하 남 시	1		1	2,400
오 산 시		1	1	2,400
양 주 시	76	2	78	187,237
이 천 시	126	1	127	304,860
구 리 시			0	-
안 성 시	124	4	128	307,261
포 천 시	80	1	81	194,438
의 왕 시	17		17	40,808
양 평 군	54		54	129,626
여 주 시	47		47	112,822
동 두 천 시	12	1	13	31,206
가 평 군	34		34	81,616
과 천 시			0	-
연 천 군	23		23	55,211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사업량 : 37개소
- 지원내용 : 냉난방비, 공과금,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200~280천원
  -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

※ 운영비 지원단가 (단위 : 천원 / 월)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81~100인	101~120인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303,059	107,985	99,147	95,927
국비	173,000	59,000	58,000	56,000
도비	82,205	28,498	27,315	26,392
시군비	47,854	20,487	13,832	13,535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액 전액 환수

## 참고

## 2022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계획(안)

※ 확정내시 기준(추경 반영 예정) : 94,609천원(국 56,000, 도 26,261, 시군 12,348)

연번	시군	사업량	소요예산(천원)	어린이집명	비고
<b>계</b>	<b>14개 시군</b>	<b>37</b>	<b>94,609</b>		
1	수 원 시	1	2,557	경동	
2	용 인 시	4	10,228	경기	
3				모현	
4				세움	
5				양지	
6	화 성 시	6	15,342	발안	
7				비봉	
8				샛별	
9				송림	
10				송산	
11				정남	
12	김 포 시	7	17,899	고촌	
13				늘푸른	
14				마조	
15				벤엘	
16				월곶	
17				전원	
18				통진	
19	광 주 시	1	2,557	햇빛	
20	안 성 시	3	7,671	나라	
21				새동그라미	
22				푸른나무	
23	의 왕 시	4	10,228	거봉	
24				다솜	
25				의왕	
26				지구촌	
27	양 평 군	1	2,557	미지	
28	고 양 시	1	2,557	고려	
29	남양주시	3	7,671	법인 진달래	
30				사회복지법인양정	
31				신성	
32	파 주 시	3	7,671	광탄	
33				금곡	
34				진인	
35	동두천시	1	2,557	해오름	
36	가 평 군	1	2,557	보람	
37	연 천 군	1	2,557	임진	

# 4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4-1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0년(정부지원), 2003년(정부미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원장 · 조리원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장애아전문 · 통합 및 일반 어린이집 치료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 관리시 지원)

\*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 사업량 : 57,829명

○ 지원내용

구 분		평가인증(평가제 A, B, C) 어린이집	미인증(평가제 D) 어린이집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원/인	월120천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원/인	월370천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원/인	월170천원/인
	치료사	월450천원/인	월42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 60천원/인
월급형 대체교사		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이하시 30천원 차감)	

○ 총사업비 : 112,09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7,829	112,098,960	-	26,683,836	85,415,124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49,129,440	119,121,600	117,908,880	112,098,960
도 비	82,604,292	28,291,620	27,628,836	26,683,836
시군비	266,525,148	90,829,980	90,280,044	85,415,124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종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 B, 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 B, C등급) 어린이집의 교직원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차감

※ 범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리원은 지원기준 적합자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직원(임시교직원)

##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월급형(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 관리시 지원)
  - \*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사업량 : 50,799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 총사업비 : 33,817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0,799	33,817,200	-	16,908,600	16,908,600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3,334,760	34,959,240	34,558,320	33,817,200
도비	51,667,380	17,479,620	17,279,160	16,908,600
시군비	51,667,380	17,479,620	17,279,160	16,908,600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월급형 대체교사도 동일 기준 정부지원 단가 적용)

\*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희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처우추가”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본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

##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4-3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2년, 2012년(다문화), 2018년(영아심화)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구 분	지원액	대 상	전문교사 요건
영 아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반 담당교사</li> <li>※ 일시보육반(0,2세)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li> </ul>
	월3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li> </ul>
다 문 화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li> </ul>
장 애 아 전문교사	월1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반 담당교사</li> <li>•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① 보육교사 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012년까지 시행)” 240시간 이수자</li> <li>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li> <li>③ 유자격자로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li> </ul>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 원장(대표자)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 사 업 량 : 36,899명

- 총사업비 : 20,6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6,899	20,599,560	-	4,960,764	15,638,796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8,143,080	18,449,040	19,094,480	20,599,560
도비	13,862,604	4,415,928	4,485,912	4,960,764
시군비	44,280,476	14,033,112	14,608,568	15,638,796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종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가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특수근무”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나.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야간연장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 야간연장교사(별도 채용된 6시간 이상 근무자)중 영아만 보육시 영아전문교사 수당 지급 가능(매월 1일 현원기준, 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 단 0세아 전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서 등 지급요건 증빙서류 확인 철저
  - ※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은 본 지침 양성교육기관 참조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4-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3년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량 : 12,368일, 30개소
- 지원내용 : 보육교사(87천원/일), 조리원(74천원/일), 운영비(인원별 차등) 지원
- 총사업비 : 1,17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일/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368/30	1,175,658	-	309,578	866,080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744,732	1,882,240	1,686,834	1,175,658
도비	1,216,398	480,154	426,666	309,578
시군비	3,528,334	1,402,086	1,260,168	866,080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 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 연장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 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일부 조정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	○	○	○	
	연가	1~20일	○	○	○	○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	○	○	○	
	건강검진	1일	○	○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	○	○	○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	○	○	○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	○	○	○
		감염성 질환	기간 제한없음	○	○	○	○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	○	○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	×	×	○	
	출산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 최우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나. 사업관리

- 채용방법(원장 채용)
  -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인력풀 활용 및 연계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동일 자격 소지자 우선채용
  - 조 리 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 식품위생법상 배치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이외(50인 미만 식사제공)에는 자격 소지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인력관리: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자격확인, 경력관리 등 준용

## 다.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7,140원/인(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2022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변동시 동일적용)
    -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0,880원)으로 지급 가능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 리 원 : 일 74,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250원)으로 지급 가능,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근무가능(단, 최대 8시간)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운 영 비 : 월급형 대체교사 인원구간별 차등지원(반기별 지원/연 2회)
    - 지원액

인 원	1~10명	11~20명	21~30명	31~40명	40명이상
운영비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 인원기준 : 시군 센터별 '21.12월말(상반기), '22.6월말(하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인원(관리자 포함)

- 집행기준 : 대체교사의 교통비 및 제 수당으로 50%이상 지원, 그 외 사업추진 (월급형 및 일급형 인력풀 관련 포함)에 필요한 운영비(홍보 및 교육 등)로 사용
  -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 불가피 한 경우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제수당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 가능
  - ※ 운영비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와 자산물품취득 및 시설개선비 사용은 불가함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 단,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제외대상

- 보조교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라.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
  -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 시·군에서는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연1회 이상 점검·확인
  -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 보고 구비서류 불요
- 본 지침 외 사항은 2022년 보육사업안내 준용

## 4-5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교사 확충에 기여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준용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정부서)에서 '16년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부서)로 이관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치료사 포함)
- 사업량 : 9,448명
-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2,471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448	12,471,093	7,277,000	3,371,283	1,822,81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42,128,440	15,495,416	14,161,931	12,471,093
국비	24,119,000	8,594,000	8,248,000	7,277,000
도비	11,259,686	4,059,600	3,828,803	3,371,283
시군비	6,749,754	2,841,816	2,085,128	1,822,810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목적

-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 나. 지원대상

- ①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② 치료사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 다. 지원조건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 ① 근로자의날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라. 지원단가 : 월 11만원

마.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사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월 포함 3개월)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4-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준용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연 혁

- 시행시기 : 담임교사 지원비(2012년),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2020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사업량 : 42,967명
- 지원내용 : 담임교사 월 260천원/인,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30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110,399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2,967	110,398,746	65,470,000	30,417,959	14,510,787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364,993,685	124,036,827	130,558,112	110,398,746
국비	213,265,439	70,312,000	77,483,439	65,470,000
도비	99,613,187	33,209,117	35,986,111	30,417,959
시군비	52,115,059	20,515,710	17,088,562	14,510,787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나. 지원대상

- ①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 ③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다. 지원조건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 ① 근로자의날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30시간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지원 가능

### 라. 지원단가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라.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담임교사지원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준용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 사업량 : 7,000명
- 지원내용 : 월 75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5,94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7,000	5,942,840	3,386,000	1,597,571	959,269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17,456,305	6,114,964	5,398,501	5,942,840
국비	10,081,000	3,486,000	3,209,000	3,386,000
도비	4,733,879	1,644,313	1,491,995	1,597,571
시군비	2,641,426	984,651	697,506	959,269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지원단가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 ① 근로자의날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라.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

### 마.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어린이집 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및 제36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사업량 : 1,140명
- 지원내용 : 대체교사 인건비 월 2,303천원/인(8시간 기준) 지원,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 일 84천원/인(8시간 기준)
- 총사업비 : 31,50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40	31,502,929	18,595,000	8,652,516	4,255,413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76,730,840	25,047,617	20,180,294	31,502,929
국비	44,512,000	14,055,000	11,862,000	18,595,000
도비	20,858,309	6,660,549	5,545,244	8,652,516
시군비	11,360,531	4,332,068	2,773,050	4,255,413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 1~10일, 최대 10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0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 등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성 질환 의심으로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사겸직원장은 해당 지역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 라.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 2,303천원, '22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917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li> <li>-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li> <li>○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li> <li>○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li> <li>○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li> <li>-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li> </ul> </li> <li>○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li> <li>○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li> </ul>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이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이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희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 다.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 87,140원(8시간 기준)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 마.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0일까지 지원

## 4-9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준용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정원충족율 50% 이상)
- 사업량 : 17,126명(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량 포함)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월 1,025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222,16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7,126	222,164,228	131,463,000	61,150,191	29,551,037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장보육교사 사업비 포함

###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609,277,378	183,311,632	203,801,518	222,164,228
국비	356,360,424	104,175,467	120,721,957	131,463,000
도비	166,533,821	49,206,993	56,176,637	61,150,191
시군비	86,383,133	29,929,172	26,902,924	29,551,037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기준

#### 1) 지원대상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 2)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3) 지원인원

○ ‘1) 지원대상’ 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 지원가능(1개소 당 지원인원 상한 없음)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정원충족률 50% 이상)

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 나. 세부기준

-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가능(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지원(전문>통합, 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 선정시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22.3월부터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지급 예정) 어린이집인지 여부 고려(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다(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표창 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 (지원단가) ‘22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25천원\* 지원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 (참고) III.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 담임교사의 업무 >

- 담당 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 등·하원 및 출결관리
- 영유아의 식사·낮잠 생활습관 등의 지도
-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원아수첩, 보육일지, 관찰일지, 투약일지 등)
- 학부모 상담 등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 이때,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라. 사업기간 : '22년 3월 ~ '23년 2월

### 마.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22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2.3~'23.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임면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보육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바. 유의사항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한 계산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예시) '22.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3년, '24년은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여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2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및 제36조

□ **연혁**

○ 시행시기 : 2020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연장반 구성되어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과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 사업량 :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참고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보조교사 예산포함) 월 1,025천원/인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30천원/인 지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연장 반 수 고려 등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 선정시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223월부터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지급 예정) 어린이집인지 여부 고려(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다.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바. 자격 조건

- 보육교사, 특수교사

## 사.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 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시·군·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
-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 자.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인 경우
  -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 :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12,086명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안단체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 지원내용 :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의 80%(원장, 영아반 교사), 30%(유아반 교사) 지원
- 총사업비 : 254,43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086	254,435,451	150,166,000	69,776,181	34,493,27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734,443,618	222,702,647	257,305,520	254,435,451
국비	427,442,033	125,404,033	151,872,000	150,166,000
도비	199,732,472	59,380,723	70,575,568	69,776,181
시군비	107,269,113	37,917,891	34,857,952	34,493,270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3,854명
  - 영아전담 336, 장애아전문 396, 야간연장 2,444, 장애아통합 678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영아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지급액의 원장·영아반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명 100%</li> </ul>
장애아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지급액의 원장·보육교사 80%, 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80%+월30~40만원(수당), 치료사 100%+월40만원(수당), 조리원 1명 100%</li> <li>※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자격소지자 : 월 수당 15만원</li> <li>※ 비장애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반 교사 포함) : 월 수당 10만원</li> </ul>
야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최대 5명</li> <li>•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92천원, 최대 5명</li> <li>•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반별 467천원, 최대 5개반</li> </ul>
장애아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li> <li>•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17천원</li> <li>※ 특수교사(유치원과과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수당은 "장애아전문"과 동일</li> </ul>

- 총사업비 : 71,06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854	71,064,448	41,738,500	19,506,220	9,819,728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221,449,480	74,217,567	76,167,465	71,064,448
국 비	128,077,226	41,601,726	44,737,000	41,738,500
도 비	60,191,356	19,776,280	20,908,856	19,506,220
시군비	33,180,898	12,839,561	10,521,609	9,819,728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에 필요한 인성 및 지식·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8,337명
-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보육교직원
- 지원기준 : 직무\*(8만원), 승급(14만원), 원장사전(16만원, 자부담)  
\* (직무) 기본/심화교육(8만원), 장기 미종사자 교육(8만원, 자부담)
- 교육과정 : 직무(40시간), 승급(80시간), 원장사전직무(80시간)
- 총사업비 : 832,6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사군비	
합계	8,337명	832,600	492,500	229,630	110,47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본예산)
계	2,680,350	943,750	904,000	832,600
국비	1,564,500	536,000	536,000	492,500
도비	732,483	253,393	249,460	229,630
시군비	383,367	154,357	118,540	110,470

※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시행 예정 ('22. 3월 중)

영아·다문화 보육의 전문교육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품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교육과정 및 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전문교육	영아전문과정	· 교육 희망 보육교사	4,500명
	영아전문심화과정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후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500명
	다문화전문과정	· 교육 희망 보육교사	780명
	합 계		9,780명

- 교육기관 :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7개소
- 교육과정별 시간 및 수강료

과정명		교육시간	수강료	비 고
전문교육	영아전문과정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44만원	교육비 자부담
	영아전문 심화과정	20시간	10만원	
	다문화전문과정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44만원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추진
  - 해당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 영아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교사, ②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③ 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 영아전문심화교육 선발 우선순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많은 순서로 선발(수료증과 경력증명서로 확인)
- ※ 다문화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만 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②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③ 기타 희망자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 성적(100점 만점) 80점 이상인 자
-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수강 필수
- ※ 영아전문심화과정은 제외

**《 수강방법 》**

1.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www.dre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방법 1)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 취업 → 교육, 컨설팅 →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수강신청  
 (방법 2) 상단 검색창에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입력 후 수강신청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센터(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 하반기 교육 참여가능

○ 수료자 관리

- 교육원 :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
- ※ 영아전문·다문화전문 교육과정의 경우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이수 확인 후 교육생의 교육 수료처리
- 시·군 : 인사기록부에 교육 이수사항 기록 관리
- 교육과정별 수료자 인센티브

과정명		수료자 인센티브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영아전문심화과정	· 특수근무수당(월3만원 / 인) 추가 지원
	다문화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 ※ 영아·다문화전문 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단, 영아심화 수료시 3만원 추가 지급
- 영아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과정 운영은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급 해결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어린이집 특수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교육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 신규인력양성과정 참여 시 (12개 시)
    - 남부(10개) : 성남, 용인,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김포, 하남
    - 북부( 2개) : 고양, 남양주
- 지원내용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 사업량 : 186명 ※ 1인당 교육비 1,000천원
- 교육과정 : 15주 과정 (온라인 + 대면교육)
  - 특수아통합교육·교육학개론, 특수아부모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등
  - ※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남양주시 제안) 선정사업('20~'22년 3년간 추진 후 일몰사업)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186,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정률보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186명	186,000	55,800	130,200	

□ **사업 추진 안내**

- 운영방식
  - 시·군별 지역특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교육 지원

현장실습 등 전문적인 대면교육 추진을 통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보육환경 점검·개선 등 직무역량 강화로 특수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 전담교사
  - ※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참여 시 (5개 시) : 성남, 용인, 안산, 화성, 하남
- 지원내용 : 재직 중인 장애영유아전담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
- 사업량 : 81명 ※ 1인당 교육비 500천원
- 교육과정 : 8주 과정 (온라인 + 대면교육)
  - 통합보육 교수전략, 교육프로그램 작성·진단, 현장실습 등 전문적인 대면교육
  - ※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남양주시 제안) 선정사업('20~'22년 3년간 추진 후 일몰사업)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40,500천원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정률보조)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81명	40,500	12,150	28,350	

□ **사업 추진 안내**

- 운영방식
  - 시·군별 지역특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추진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교육 지원

## IV. 부 록

---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보육료 지원기준표·처우개선비 지원표
  - 주요 보육통계표
  - 자치법규(소관조례)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2.1월 현재)

연번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개소일	비고	
<b>합계</b>		운영 32개소(경기도2, 29시군 30개)				
1	경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2003.11.12		
2	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	2008.09.01		
3	수원동부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2015.11.20		
4	성남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1993.03.01		
5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1999.07.10.		
6	용인시	용인송담대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2015.03.13		
7	안산시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1994.05.01		
8	안양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	1997.03.12		
9	평택시	국립한국북지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2007.10.02		
10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23번길 37	2006.08.03		
11	화성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어린이문화센터 4층)	2009.08.25		
12	광명시	사회복지법인한솔교육희망재단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2011.01.20		
13	군포시	안양대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2010.01.28		
14	김포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2014.12.22		
15	이천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34길 38 (종리동)	2006.07.01		
16	오산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2015.09.01		
17	안성시	사단법인 에듀케어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2, 삼가동 아양NH 6단지	2021.05.06		
18	의왕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1층	2001.01.19		
19	과천시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2013.11.01		
20	광주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2016.04.27		
21	하남시	이케이보육경영연구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125 5,6층(풍산동)	2018.07.01		
22	여주시	여주대학교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	2019.10.01		
23	양평군	사단법인 에듀케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52-4	2021.08.02.		
24	경기북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신곡동)	2008.02.27		
25	고양시	사회복지법인대건카리타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2003.04.03.		
26	남양주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2015.07.17		
27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2007.09.03		
28	파주시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2012.06.01		
29	양주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3층	2013.04.10		
30	구리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2013.11.26		
31	포천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내	2018.01.02.		
32	가평군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7	2020.01.01		

※ 개소예정 시군 : 연천(’22년), 동두천(’23년)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2022. 2월 현재]

연번	교육기관명	원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총 20개소 (보육교사교육원 6개소, 대학교 14개소)					
1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유현정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	235-2290	
2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이해영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350-7518	
3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신완식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330-6117	
4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병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899-7075	
5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신재홍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750-5760	
6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정재탁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740-1114	
7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재영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032-610-0575	
8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김정남	부천시 경인로 194, 2층	032-655-0453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진국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496-4658	
10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주성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400-7096	
11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성락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490-6000	
12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상욱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467-4502	
13	에듀케어 보육교사교육원	이창수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5, 6층	466-3131	
14	한국복지대학교 평생 교육원	이은형	평택시 삼남로 283(장안동)	610-4714	
15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연옥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760-0202	
16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이만수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 5층	970-8100	
17	김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정환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97	999-4299	
18	경북대학교 영유아교육원	박미경	남양주시 진전읍 경북대로 425	570-9925	
19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민문기	구리시 검배로 61, 3층	569-9090	
20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김성일	의정부시 의정로52번길 18, 4층	876-5546	

##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 고
어린이집	지원총액 (①+②+③)	국공립 등	499	439	364	280		인건비 30~80% 지원
		민간	1,069	749	574	385	362	
		가정				388		
	정부지원 보육료(①)	국공립· 민간·가정 등	499	439	364	280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시간당) : 영아반 2, 유아반 1, 0세·장애아반 3
	부모부담 보육료(②)	민간	-			105	82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도+시·군)
		가정	-			108		
기관보육료(③)	민간·가정	570	310	210	-		장애아 622, 방과후 530	
가정양육	영아수당		300		-		0~23개월 이하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가정 양육수당	일반아동			100		24~86개월 미만	
		농어촌	-	-	156	129		100
		장애아동			200	100		

## 처우개선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 수당	처우개선비 추가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교사 겸직원장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	교사	영아반 (0~2세)	570	200	80	30	260 *연장보육 전담교사130		
		유아반 (3~5세)	560	110		90			360 *영유아 혼합반260
	교사겸직원장	155		80				75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등)	교사	영아반 (0~2세)	570	150	80	80	260 *연장보육 전담교사130		
		유아반 (3~5세)	560	110		90			360 *영유아 혼합반260
	원장	교사겸직 원장	305	150	80				75
		원 장	150	150					

※ 평가미인증(평가제D) 어린이집의 경우 도비지원 처우개선비 △3만원(누리과정 △5만원)

※ 특수근무수당은 경기도교육원 교육 수료한 영아반 담당교사 지원(영아전문 5만원, 영아전문심화 3만원)

※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 치료사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국비) 11만원 추가 지원

# 주요보육통계

## □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 '21. 12월말)

구분	총 영유아수 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②	유치원 이용 유아수 ③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수 ④=(①-②-③)	
전국(%)	2,387,763(100)	1,184,716(49.6)	582,572(24.4)	620,475(26.0)	
경기도	(%)	702,824(100)	350,117(49.8)	161,980(23.0)	190,727(27.1)
	전국대비	(29.4)	(29.6)	(27.8)	(30.7)
서울시(%)	375,106(100)	182,922(48.8)	69,958(18.7)	122,226(32.6)	

※ 총 영유아수 : 주민등록통계 만0~6세 / 유치원 이용 유아수 : 교육통계 2021년 4월 기준

##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개소 / '21.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복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3,246(100)	5,437(16.4)	1,285(3.9)	640(1.9)	10,603(31.9)	13,891(41.8)	142(0.4)	1,248(3.8)	
경기도	(%)	10,136(100)	1,220(12.0)	59(0.6)	102(1.0)	3,236(31.9)	5,163(50.9)	65(0.6)	291(2.9)
	전국대비	(30.5)	(22.4)	(4.6)	(15.9)	(30.5)	(37.2)	(45.8)	(23.3)
서울시(%)	5,049(100)	1,811(35.9)	23(0.5)	92(1.8)	1,162(23.0)	1,637(32.4)	28(0.6)	296(5.9)	

##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 '21.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557,496(100)	326,210(20.9)	113,294(7.3)	46,084(3.0)	715,671(46.0)	259,901(16.7)	4,636(0.3)	91,700(5.9)	
경기도	(%)	441,927(100)	81,686(18.5)	4,960(1.1)	8,339(1.9)	226,315(51.2)	96,942(21.9)	1,974(0.4)	21,711(4.9)
	전국대비	(28.4)	(25.0)	(4.4)	(18.1)	(31.6)	(37.3)	(42.6)	(23.7)
서울시(%)	235,682(100)	103,922(44.1)	1,690(0.7)	5,427(2.3)	73,175(31.0)	29,967(12.7)	859(0.4)	20,642(8.8)	

## □ 어린이집 현원

(단위 : 명 / '21.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184,716(100)	268,967(22.7)	72,085(6.1)	30,998(2.6)	535,428(45.2)	208,842(17.6)	3,465(0.3)	64,931(5.5)	
경기도	(%)	350,117(100)	70,403(20.1)	3,512(1.0)	5,724(1.6)	172,486(49.3)	80,731(23.1)	1,557(0.4)	15,704(4.5)
	전국대비(%)	(29.6)	(26.2)	(4.9)	(18.5)	(32.2)	(38.7)	(44.9)	(24.2)
서울시	정원충족률	79.2%	86.2%	70.8%	68.6%	76.2%	83.3%	78.9%	72.3%
	(%)	182,922(100)	85,501(46.7)	1,187(0.6)	3,873(2.1)	54,604(29.9)	23,846(13.0)	661(0.4)	13,250(7.2)
정원충족률	77.6%	82.3%	70.2%	71.4%	74.6%	79.6%	76.9%	64.2%	

##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 개소 / '21. 12월말)

구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공공형	0세아
전국	12,737	344	178	1,317	175	7,671	145	283	2,328	296
경기도	3,419	40	21	468	7	1,855	37	51	644	296
(전국대비)	(26.8)	(11.6)	(11.8)	(35.5)	(4.0)	(24.2)	(25.5)	(18.0)	(27.7)	(100)
서울시	2,622	34	8	404	57	2,033	25	61	-	-
(전국대비)	(20.6)	(9.9)	(4.5)	(30.7)	(32.6)	(26.5)	(17.2)	(21.6)	-	-

## □ 보육교직원

(단위 : 명 / '21. 12월말)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전국	321,116(100)	33,087(10.3)	236,085(73.5)	1,684(0.5)	1,040(0.3)	985(0.3)	29,575(9.2)	18,660(5.8)
경기도	92,320(100)	10,083(10.9)	68,195(73.9)	346(0.4)	337(0.4)	316(0.3)	10,051(10.9)	2,992(3.2)
(전국대비)	(28.7)	(30.5)	(28.9)	(20.5)	(32.4)	(32.1)	(34.0)	(16.0)
서울시	52,263(100)	5,030(9.6)	38,436(73.5)	385(0.7)	168(0.3)	162(0.3)	3,771(7.2)	4,311(8.2)
(전국대비)	(16.3)	(15.2)	(16.3)	(22.9)	(16.2)	(16.4)	(12.8)	(23.1)

## 경기도 보육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시행 2022. 1. 6.]

- (제정) 2003-11-26 조례 제 3302호
- (일부개정) 2005-06-13 조례 제 3414호
- (전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3714호
- (일부개정) 2010-11-08 조례 제 4098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4126호
-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 4158호
- (일부개정) 2012-01-05 조례 제 4308호
-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3-04-04 조례 제 4530호
-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 4807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5-07-17 조례 제 4966호
- (일부개정) 2015-11-04 조례 제 5070호
-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 5231호
-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5648호
-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 5718호
- (일부개정) 2019-03-13 조례 제 6103호
-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 6630호
- (일부개정) 2020-11-12 조례 제 6827호
- (일부개정) 2022-01-03 조례 제 7271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22-01-06 조례 제 73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3.4.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4.>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9.3.13.>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의 등록금 받음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3.13.>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 9. 중장기 보육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4.4.]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전문개정 2013.4.4.]
  -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전문개정 2013.4.4.]
  -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전문개정 2013.4.4.]
  -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4.4.]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7.7.17.]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 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8.] <개정 2013.4.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4.>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7.17.>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4.4.>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4.30.>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4.]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4.]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4.4.]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1.8., 2011.3.15., 2015.4.30.>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4.30.>

1.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관리 [신설 2020.05.19.]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12.1.5.>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5. 육아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인력은행 운영
7. 평가제 컨설팅 [전문개정 2020.05.19.]
8.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12.1.5.>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전문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여
10.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11. 어린이집 현황조사 및 주민 요구도 조사 <개정 2012.1.5.>
12. 놀이지도 사업 [신설 2020.05.19.]
13. 장애영유아, 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신설 2020.05.19.]
14.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5. 영유아 문화공연단 운영을 통한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6. 어린이집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간의 동아리 등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20.05.19.]

18. 그 밖의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개정 2015.4.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 2015.4.30., 2015.11.04.> [단서삭제 2015.11.0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1.5., 2015.4.3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4.30.>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5.11., 2015.4.30.>

**제14조(비용)**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 포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5.07.17.>

**제15조(보육계획)**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의2(0세아 보육 특례)** <개정 2015.07.17.> 어린이집 운영자는 만1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제15조의3(역세권 등의 어린이집 설치)** <개정 2012.1.5.> 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에 어린이집의 설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제15조의4(보육료 고시)** 도지사는 매년 1월 말 이내에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본조신설 2012.1.5.]

**제15조의5(우수 교재·교구 보급)**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교구를 우선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제15조의6(소아당뇨가 있는 영유아의 우선 선발)**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17.]

**제15조의7(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5조의8(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 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5조의9(장애아 보육 특례)**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보육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2.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사업
3.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6.]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시장·군수는 매년 관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를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11.3.15.]

**제17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권익을 존중하고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본조신설 2019.3.13.]

**제17조의2(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8조(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사·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3.13.]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개정 2013.4.4.>
2. 휴일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보육지원 사업비 및 장애아·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전문개정 2020.11.12.]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2.1.5.>
4.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개정 2012.1.5.>
5. 삭제 <2020.05.19.>
6. 0세아 전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도의 지정을 받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개정 2013.4.4., 2015.07.17.>
7.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지원 <개정 2012.1.5.>
8. 교재교구비 지원 [신설 2011.3.15.]
9. 부모와 아이를 위한 컴퓨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신설 2013.4.4.]
10. 보육인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육아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7.7.17.]
11.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17. 9.29.]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 및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17. 9.29.]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5.11., 2013.4.4., 2017. 9.29.>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13.4.4.>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관리감독)** 도지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07.17., 2020.05.19.>

**제22조(예산지원의 제한 등)**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4.12.31., 2015.07.17., 2020.05.19., 2022.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촉, 임명, 위수탁 협약, 비용보조 등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5조제2항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촉, 임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5호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②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 직장

어린이집 “으로 한다.

- ④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공립보육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⑥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중 “보육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23) 생략

(2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로 한다.

(25)항 부터 (53)항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271호,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시행 2021. 8.10.]

(제정) 2021-08-10 조례 제 715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4. 보육교직원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 ① 도지사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채용시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사업)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6. 경기도 보육 담당 부서의 국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시행 2021. 7.14.]

(제정) 2021-07-14 조례 제 712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는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 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6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도지사는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시행 2016. 2.24.]

(제정) 2016-02-24 조례 제 5169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

도지사는 교육원 운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2.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보육정책과장	정구원	031-8008-2540	· 보육정책과 업무 총괄
보육정책팀장	김덕선	031-8008-2370	· 보육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임기량	031-8008-4718	· 주요회의 및 보육정책 수립 등 현안
주무관	남정우	031-8008-2598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주무관	김새난	031-8008-2799	· 예산, 통계 등
주무관	-	031-8008-472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주무관	고의인	031-8008-4725	· 서무, 회계, 표창 등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031-8008-2571	· 보육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오혜정	031-8008-257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주무관	동창환	031-8008-2574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주무관	신성원	031-8008-4715	· 시간제 보육지원 등
주무관	박소현	031-8008-2573	·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보육기반팀장	권은희	031-8008-2551	· 보육기반팀 업무총괄
주무관	한수경	031-8008-254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주무관	조선래	031-8008-4732	·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전관리 업무 등
주무관	정지연	031-8008-2543	·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보육컨설팅팀장	김양현	031-8008-2595	· 보육컨설팅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종현	031-8008-2596	·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주무관	박연아	031-8008-4729	·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등
주무관	허지수	031-8008-2568	·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설치 운영 등
주무관	홍미라	031-8008-4743	· 어린이집 재무회계 부정 운영 분석 등
보육품질관리팀장	백승미	031-8008-2557	· 보육품질관리팀 업무 총괄
사무관	김순천	031-8008-4733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관리시스템 관리 등
주무관	박미숙	031-8008-2556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활성화 등
주무관	김선주	031-8008-4744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관리
주무관	김세명	031-8008-4726	· 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

## 2022년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

인 쇄 : 2022년 2월

발 행 : 2022년 2월

발 행 처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게 시 처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http://www.gg.go.kr))

전 화 : (031)8008-2799

팩 스 : (031)8008-2549

---

